



/ 건강한 삶, 행복한 일터 만들기 /

마음나래 프로그램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교정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대상** 교정공무원 직원(필요시 배우자, 부모, 자녀와 함께 이용 가능)
- 장소** 원하는 상담센터 및 교정기관



상담신청 바로가기

[프로그램 상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문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수: 교정공무원 1인당 연간 10회기 지원(필요 시 4회기 추가) ▶ 주제: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부부/자녀상담, 법률/세무/재무상담 등 ▶ 상담 방법: 대면, 전화, 화상, 채팅 상담 위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핫라인 운영) 실시간 위급 전화 상담 운영
긴급심리지원 (마음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살 목격, 병사), 폭행피해 등 교정사고 또는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방류, 혹은 장소 별도 협의하여 긴급 개인(단체) 심리 지원 실시 ▶ 긴급심리지원 전담팀의 전화 스크리닝 실시 후 개입 여부 결정
정신과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지원 (본인에 한해 실비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 치료비 지원 불가
찾아가는 심신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교정기관 실시(대형기관 4일, 그 외 기관 3일 진행) · 스트레스 측정 및 심리검사 해석상담 · 마음치유 힐링 프로그램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각종 심리특강 · 커피차 및 이벤트 등 힐링부스 운영 ※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일수 및 내용 변동 가능
심리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나래 웹사이트 접속 후 심리검사 및 각종 심리진단 가능 · CSQ(통합직무스트레스검사), MHA-CO-R(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평가척도), 마음산책(내 마음 종합보고서), 패밀리케어 심리검사 등

직무 스트레스 & 심리적 활전 전문지우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

신청 및 문의. 1661-1508
24시간 위기전화상담. 010-3930-9110

TALK 카카오톡에서 교정 마음나래 친구추가 하세요.

마음나래 웹사이트
http://maumnarae.co.kr

*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상담 이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며, 건강보험 이용 기록이 남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십시오.

CORRECTION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이모저모

'마약과의 전쟁' 이후 정부 대응과 과제
2023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교정 포커스

우리나라 근대 분류처우제도의 도입

교정 논문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분석 중심)(상)

교정 판례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기간 판례 연구

01

Vol.572. 2024. JANUARY

COVER STORY

겨울이 되면 자연은 새로운 모습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월간 <교정>도 2024년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응원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04 교정 이모저모

'미약과의 전쟁' 이후 정부 대응과 과제
2023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06 역사와 오늘

비상하는 청룡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다
원주교도소

12 교정의 공간

불편함을 지우고 쾌적함을 더하다
원주교도소 복지과

16 외부 칼럼

'나의 육각형'을 향한 힘찬 발걸음



18 교정 포커스

우리나라 근대 분류처우제도의 도입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36 교정 논문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 중심)(상)
엄동철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58 교정 리포트

남성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으로 인한
중독과 회복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학술 연구 교수

90 전문가 칼럼

교도관으로, 그리고 상담자로 살아내기
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치료센터 교감



94 교정 판례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기각 판례 연구
김자영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112 교정 백과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박상열 광운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132 교정 NEWS

141 모범 공무원

142 독자마당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라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2023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마약과의 전쟁' 이후 정부 대응과 과제

'2023년 추계학술대회', 성공적으로 개최

2023년 추계학술대회가 12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학회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 사무총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신화산업 이재연 대표, 그리고 한국교정학회장 오경식 교수 등 내외빈과 200여 명의 학회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2023년 추계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제반 학술연구를 통해 법

2023년 한국교정학회·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는 12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교정 및 법무보호 분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식 공유와 유대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마약과의 전쟁' 이후 정부 대응과 과제에 중점을 둔 세션들이 진행됐다.

무보호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2회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는 한국교정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전국연합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가 후원하여 개최했다.

1, 2부로 알차게 구성된 교류의 장

2023년 추계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다양한 주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1부에서는 동국대학교 최용렬 교수의 좌장 아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광수 연구원과 김남희 연구원이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및 '마약과의 전쟁'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2부에서는 목포대학교 김신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무부교정본부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이용옥 팀장이 마약류 중독, 치료, 법무보호연구에 관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는 교정 및 법무보호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풍부한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후원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환영사로 "학술적 논의를 통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 책임을 피력했다. 문창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 처우의 현황과 과제의 끊임없는 학술 연구가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에 선구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토론과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참가자들 간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양혜경 학회장은 "학술적 논의가 재범방지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희망을 표현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교정 및 법무보호 분야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각 세션에서 이뤄진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교정 및 법무보호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촉진했다. 이런 노력은 국내 사회적 안전과 법무보호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본다.



비상하는 청룡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다

원주교도소

하늘로 승천할 때 구름을 발판 삼는다는 청룡, 바로 그 해의 첫 번째 행선지인 원주교도소를 두루 살펴본 뒤 '이곳의 행보가 비상하는 청룡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수용자 교정교화라는 교도소의 하늘에 닿기 위해 수용자 처우 개선, 다니고 싶은 직장 만들기, 지역사회와의 상호 호혜적 교류 등을 착실하게 밀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다채로운 교정교화

복숭아 과수원 구릉지대를 메운 자리에 세워진 원주교도소는 어느덧 개청 46년 차를 맞이한 원주시 무실동의 터줏대감이다. 그래서일까. 도심 개발로 주변은 완전히 탈바꿈했지만, 원주교도소만큼은 태초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단단하고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원주교도소는 외정문의 현판에 새겨진 '희망을 만들어 가는 원주교도소'라는 문구를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다채로운 교정교화에 나서고 있다. 1987년부터 수용자 심성 순화의 일환으로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 서울지방교정청 국화품평회에 꾸준히 출품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작년 10월에 열린 제32회 국화 품평회에는 총 92점을 출품했는데, 이 중 한 점이 동상을 수상하며 원주교도소 국화 재배의 저력을 널리 알렸다. 국화와 함께 수용자의 단한 마음도 활짝 피어났다.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소프라노 김미현과 오카리니스트 오정근이 출연하는 교화공연을 개최해 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로했다. 작년 10월에는 한국국악문화진흥원 국악합창단 'K-관'을 초청해 '원주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국악 향기'라는 국악 공연을 진행했는데, 일부 수용자가 공연 연습에 참가하여 국악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름으로써 공연을 관람하는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희망을 선사했다.



업무 현장에 더한 활기와 편안함

원주교도소는 직원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본청사, 민원실 휴게실, 보안청사, 보안과 당비실에는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클래식, 재즈,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2022년 9월 서민 소장 부임 직후 이뤄진 색다른 변화.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원주교도소는 2025년 10월 신축 이전이 계획돼 있음에도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및 휴식 여건 마련을 위해 식당, 보안과 당비실, 농구장을 리모델링했으며, 야구장과 민원실 휴게실을 도입해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도 두루 마련했다. 신규 채용되어 원주교도소에 처음 부임한 신입 직원들에게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이 담긴 '교도관 서약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전입 직원들에게는 공기 정화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반려 식물'을 지급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월례회 시에는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교양도서 10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이달의 모범 직원', 연말 '올해의 자랑스러운 원주인'을 선정하고 기관장 표창과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업무 현장에 활기가 가득 들어찼음은 물론이다.





오늘의 내실을 발판 삼아 새로운 내일로!

교정공무원과 교정기관의 업무 및 현안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공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주교도소는 교정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관기관 및 교정참여인사 등 지역사회 내 70여 곳을 선정해 기관장 명의 편지, 교정 관련 정기간행물, 교정 기념품, 홍보물 등을 하나의 꾸러미에 모아 분기별로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정 이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한편 원주교도소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길'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청소년들에게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과 업무를 소개하고 교도소 탐방의 기회를 제공해 미래의 잠재적 교



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작년에만 5차례에 걸쳐 많은 청소년이 원주교도소에 다녀갔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교정공무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원주교도소의 설명이다.

'청렴의 일상화'도 원주교도소 운영의 핵심 키워드다. 작년 반부패 결의대회 개최, 청렴 외부 강사 초빙 교육, 갑질 근절 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2023 청렴 마일리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작년 '종합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폭동진압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 1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쳐 내실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주교도소는 2025년 말 신축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맞춰 발전적 비전을 착실하게 그리고 있다. 원주교도소의 새로운 내일이 사뭇 기대되는 이유다.



불편함을 지우고 쾌적함을 더하다

원주교도소 복지과

1979년 개청한 원주교도소에는 46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지만, 직원들과 수용자들은 지금껏 별다른 불편 없이 업무와 수용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장 맞춤형 복지와 꼼꼼한 시설 돌봄으로 불편함을 지우고 쾌적함을 더하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과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



세월의 흔적을 매력으로 치환하다

세상 모든 존재는 세월을 피해 갈 수 없다. 하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고풍스러운 맵시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원주교도소가 좋은 선례다. 교도소 외정문을 지나면 보이는 청사의 외관은 복고적인 멋을 풍기는 반면, 내부로 들어서면 신축 교도소로 착각할 만큼 깔끔한 로비와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반전 매력의 중심에는 복지과가 있다. 이달수 과장을 포함해 26명이 근무하는 복지과에는 정복 직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복 직원과 공무원이 두루 포함돼 있으며, 물품 구입, 시설 관리, 기계 정비, 운전, 조리 등 직원과 수용자가 원주교도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살림꾼 역할을 도맡는다. 간단한 복지과 소개를 마친 이달수 과장이 복지과의 업무 중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원주교도소는 개청 46년 차를 맞이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교정기관인 동시에, 내년 말 신축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는 직원과 수용자가 현재의 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교도소 신축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 모두 원주교도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 이기에, 둘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각 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합리성과 편의성의 효율적 균형

작년 복지과는 시설 투자의 합리성과 직원 편의성을 면밀하게 저울질해 반드시 필요하며 효과성 또한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여러 방향으로 펼쳤다. 지금껏 상황대기실에는 3단 접이식 매트리스가 비치돼 있었는데, 두께가 얇고 매트 각 부분 사이사이가 벌어져 편안하게 쉬기가 어려웠다.

복지과는 이를 두껍고 폭신한 매트리스로 교체, 보안과 직원들의 휴식 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청사 및 사무실에만 비치돼 있던 프린터를 각 공장과 수용동 근무자실에 추가 설치해 인쇄 출력 시 근무지와 청사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으며, 직원 탈의실의 캐비닛을 따뜻한 느낌의 목재로 변경하고 열쇠 대신 번호키를 부착해 근무복 환복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휴식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민원실 직원들을 위해 컨테이너를 활용한 카페형 휴게실을 민원실 뒤편에 개설, 공사의 합리성과 직원의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켰다.

“음식은 인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는 ‘복지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맛과 영양가를 모두 갖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신탕, 바닷가재 구이, 생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 등의 특식도 간간이 선보임으로써 직원 식당의 식단에 대한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용자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지정 수용동 화장실에 양변기 설치 공사를 진행, 수용 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해낸 2023년, 더 잘할 2024년

복지과는 특히 겨울철 시설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



며 일해 왔다. 분지 지형인 원주의 특성상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올 겨울도 마찬가지. 노후된 배관이 약해 동과 위험이 큰 만큼, 겨울로 접어들기 직전인 늦가을부터 잘 쓰지 않는 배관의 물을 꼼꼼하게 빼낸 뒤 두터운 보온재를 둘렀다. 이런 가운데에도 수용동의 보온을 위해 보안과와 적극 협력해 탄력적 온수 난방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달수 과장의 이야기다.

“우리 과의 2023년을 한마디로 축약해 보자면 ‘잘 해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과 직원들 특유의 강한 단결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식 차량이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장갑을 끼고 우르르 달려 나가 식자재를 나릅니다. 작년 7월 모두가 힘을 합쳐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를 자체 철거해 벌목 비용 수백만 원을 아낀 사례도 있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협동심이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지과는 현재 교도소 신축 공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10%를 넘어섰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 10월 새로운 교도소가 준공될 예정이며, 2026년 초 완전 이전이 계획돼 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시설을 잘 돌보는 동시에 신축 교도소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원주교도소 복지과. 이들의 굵은 땀방울은 앞으로의 원주교도소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interview 복지과 이달수 과장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과는 각각의 업무와 전문 분야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개개인의 출중한 능력만으로는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업무가 온전히 완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저도 늘 단합과 협력을 강조하는데요.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로를 돕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부서장으로서 매우 뿌듯합니다. 2024년에도 지금처럼 무엇이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의 육각형’을 향한 힘찬 발걸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갖춘 이른바 ‘육각형 인간’이 MZ세대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들 중 일부는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기도 하지만, 진취적인 MZ세대는 자신만의 육각형 그래프를 설정하고 이를 가득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선망의 대상이 된 육각형 인간

우리는 게임이나 만화 속에서 육각형 그래프와 종종 맞닥뜨린다. 각 꼭짓점에 힘·민첩성·체력·지력 등 캐릭터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붙인 뒤 현재 능력치에 맞춰 점을 찍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면 다채로운 다각형이 완성되는데, 이를 통해 캐릭터 간 능력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다. 다각형의 모양이 가득 찬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춘 소위 ‘완성형 캐릭터’로 평가 받는다. 여러 콘텐츠에서 육각형 그래프를 자주 접해 온 MZ세대는 이를 현실로 소환했다. 게임과 달리 현실 속 육각형 그래프의 각 꼭짓점에는 외모·학력·재산·직업·집안·성격·특기 등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이 붙는다. 이 육각형을 가득 채웠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

MZ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높은 경제적 수준과 좋은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자존감 교육도 충분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꿈꾸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래의 삶을 더욱 폭넓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동네·학교 등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친구들 정도가 비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SNS를 이용하는 전 세계 또래와 나를 비교한다. 극도로 정제된 삶의 단편만을 보여주는 SNS 속에는 부족함 없음을 뽐내는 게시물이 가득하다. 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자칫 자신의 삶이 남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행복과 성공의 기준 또한 아득하게 멀어질 수 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주장대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면, 전 세계에서 잘나가는 또래들의 SNS를 엿보며 욕망의 크기를 키운 사람들은 도리어 그 욕망 때문에 불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나만의 육각형 그래프를 그린다

그렇다고 해서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풀어 오른 꿈과 욕망을 좌절의 재료가 아닌 자기계발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판타지적 요소가 듬뿍 섞인 SNS 속 육각형 인간이 아닌 나만의 육각형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게임 속 캐릭터의 꼭 찬 육각형 그래프는 게임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SNS 속 인물들의 육각형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일상의 극히 일부분을 선별해 내보임으로써 육각형 인간으로 불리게 됐을 뿐, 이들 또한 SNS 밖에서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과 마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인간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삶은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 육각형 인간의 정의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집안·외모 등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육각형 그래프에서 과감하게 빼고, 그 자리에 내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특정 지식이나 기술 등을 넣으면 그 자체로 자기계발의 동기부여가 된다. 사랑·친환경·우정 등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과 세계관에 꼭 맞춘 육각형 그래프를 만들고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발전적인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허망한 꿈과 무력감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둘 중 어떤 방향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육각형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새해를 맞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다.



우리나라 근대 분류처우제도의 도입



김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목차

- 제 1 장 서
- 제 2 장 징역표
- 제 3 장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
- 제 4 장 이후의 전개

참고문헌

I. 서

조선시대까지는 자유형과 같은 시간제 형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분류개념이 등장한 것은 1894년 「감옥규칙(監獄規則)」과 「징역표(懲役表)」가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¹⁾ 우리나라에서 「감옥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감옥제도 역사상 하나의 신기원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후 1898년에 감옥규칙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그 시행세칙인 「감옥세칙(監獄細則)」을 제정하여 행형법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다. 또한 1905년에 제정한 「행형대전」 중에서도 행형 상 필요한 규정을 두어 점차 행형법규를 완비해 갔다.²⁾ 감옥규칙의 제정 후 범죄인에 대한 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계급처우법이라고도 불려야 하는 「징역표」가 제정되었다. 징역표는 조선의 전통적 행형에서 근대적 행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수형자에 대한 분류와 단계적 처우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³⁾ 징역표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시행 여부를 알 수가 없으나 당시 제정된 징역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1938년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본 규칙을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규정 내용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시 시행된 누진처우제도가 오늘날 교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II. 징역표

가. 징역표 제정

1984년 제정된 징역표에는 수형자를 보통자(普通者), 특수기예(特殊技藝)를 가진 자, 노유자(老幼者) 및 부녀자의 4종으로 구별하고, 다시 각 종마다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의 형기의 장단에 따라 기한을 붙이고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진급시키는 동시에 검속(檢束)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면 5등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는 중쇄(重鎖)를 시행하다가 4등으로 진급하면 경쇄(輕鎖)로 하고, 또 3등으로 진급하면 양태(兩鈐), 2등은 편태(片鈐)로 하고, 1등에 이르러서 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 김용명, 교정학, 박영사, 2021년 2월 25일, 175면.

2) 1894년 11월 제정된 「감옥규칙(監獄規則)」, 1898년 1월 개정된 「감옥규칙(監獄規則)」, 「감옥세칙(監獄細則)」의 전문은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2023년 6월 10일 발간, 교도소연구소) 239~248면 참조.

3) 조택현,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이 변천과정, 월간 교정, 2009년 8월호, 통권 400호, 17면.

나. 징역표

1) 보통징역표

	역한(役限)	1등	2등	3등	4등	5등	
		계구 없음	편태(片鈇)	양태(兩鈇)	경쇄(輕鎖)	중쇄(重鎖)	
상인(常人)	도(徒)	1년	45일	45일	70일	100일	100일
		1년반	90일	30일	170일	150일	100일
		2년	120일	100일	200일	200일	100일
		2년반	150일	200일	220일	230일	100일
		3년	반년	반년	1년	260일	100일
	준유(準流)	5년	1년	반년	1년반	1년 260일	100일
		7년	2년	반년	1년반	2년 260일	100일
		10년	3년	1년	2년	3년 260일	100일
	징역	종신	종신	7년	2년	5년 260일	100일

※ 5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4등으로 진급하고, 4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3등으로 진급한다. 이에 준하여 1등의 기한이 지나면 이에 석방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든 까닭은 죄수를 징치(懲治)하고, 이로써 회심개과(悔心改過)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역한(役限)	1등	2등 상급	3등 중급	4등 하급	5등
		계구 없음	좌등	편태(片鈇)	양태(兩鈇)	중쇄(重鎖)
특수(特殊)	도(徒)	1년	45일	250일		100일
		1년반	90일	350일		100일
		2년	120일	1년 140일		100일
		2년반	150일	1년 290일		100일
		3년	반년	2년 80일		100일
	준유(準流)	5년	1년	3년 260일		100일
		7년	2년	4년 260일		100일
		10년	3년	6년 260일		100일
	징역	종신	종신	14년 260일		100일

※ 공예(工藝)에 면밀한 자는 5등급의 기한이 지나면 곧 그 예능(藝能)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당연히 상인(常人) 징역 4등급, 3등급, 2등급의 일수를 합하여 기한으로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록 하급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1등급으로 뛰어넘어 진급하고, 이에 다른 능력이 특우(特遇)하여 공예(工藝)를 권유하는 까닭이다.

2) 경(輕)징역표

	역한(役限)	1등	2등	3등	4등	
		계구 없음	편태(片鈇)	양태(兩鈇)	경쇄(輕鎖)	
노유(老幼)	도(徒)	1년	45일	45일	70일	200일
		1년반	90일	30일	170일	250일
		2년	120일	100일	200일	300일
		2년반	150일	200일	220일	330일
		3년	반년	반년	1년	360일
	준유(準流)	5년	1년	반년	1년반	2년
		7년	2년	반년	1년반	2년
		10년	3년	1년	2년	4년
	징역	종신	종신	7년	2년	6년

※ 노유(老幼) 약질(弱質)은 건장한 수인(執役壯囚)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가벼운 노역을 집행하는 것은 늙은이와 어린이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 까닭이다.

	역한(役限)	1등	2등	3등	4등	
		계구 없음	계구 없음	동	동	
부녀(婦女)	도(徒)	1년	75일	285일		
		1년반	140일	1년 40일		
		2년	200일	1년 160일		
		2년반	230일	1년 310일		
		3년	260일	2년 100일		
	준유(準流)	5년	1년반	3년반		
		7년	2년반	4년반		
		10년	4년	6년		
	징역	종신	종신	10년		

※ 부녀(婦女)는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등급에 진급하면 수예(殊藝)징역의 2·3·4 등급을 통산하여 하나의 기한으로 하는 예이다. 또 그 기한을 줄이는 까닭은 부녀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다는 뜻에서 나왔다.

다. 평가

징역표의 목적은 수형자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계급적으로 처우함으로써 행형운영의 적실(適實)을 기하는 동시에 향상개전(向上改悛)을 촉진하고 공예(工藝, 공작에 관한 예술)를 장려하도록 한 것에 있었다.

이 처우법의 실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전혀 불명하기 때문에 실사를 보기에 이르지 못하고 공문(空文)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처우법은 그 후 특별하게 폐지한 형적(形跡)도 없었지만 근대국가체제로의 전환기(1894년 이후

부터 대한제국말)에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어느 사이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위 징역표 중에 기재하고 있는 태(鈇), 중쇄(重鎖) 및 경쇄(輕鎖)라 불리는 보호장비는 그 근거가 전혀 불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상으로도 그와 같은 계구를 만들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전근대 형벌과 행형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고통부과라고 하는 사상적 기초로부터 범죄자에게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점에서 현대교정의 맹아라고 평가할 수 있다.

III.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

가. 서

1938년 1월 1일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1933년 10월 25일 일본에서 시행되어 행형에 구태를 탈피하고 획기적인 도약을 하면서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었던 「행형누진처우령(行刑累進處遇令)」(일본 사법성령 제35호)를 기초로 한 것이다.⁴⁾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나.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의 개요

1) 총칙

제1조 본령은 수형자의 개선(改悛)을 촉진하여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발분노력의 정도에 따라 누진적 처우를 완화하고 수형자로 하여 점차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행형의 참된 목적은 범인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사회복귀에 있다는 것은 국가를 불문하고 다르지 아니하다.

본령 제1조의 목적을 요약하면 수형자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갱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희망을 주고 발분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함으로써 점점 개선의 정도를 높여 독립자치의 정신을 기르고, 점차 그 자유를 확대해 감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책임관념을 함양하는 한편 특수한 구금생활로부터 점차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처우가 완화되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마끼노 에이이찌(牧野英一) 박사는 ‘희망의 원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끼노(牧野) 박사는 “희망은 생활의 중요한 점으로 개인도, 국가도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인은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고, 또 실제로

희망을 가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희망이 있는 곳에 활동이 있고, 유쾌하고 기쁨이 있고, 협력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번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수형자 최후의 한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도록 하고, 그 뜻을 달성하여 반성,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발분노력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본 규칙 제1조는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을 중요한 지도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다. 나아가 그 처우를 완화하는 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누진제는 처우 완화와 책임의 누진과의 조화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제2조 본령은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외에 징역수형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1. 집행할 형기가 1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2. 만 65세 이상으로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
3. 임산부
4. 불구, 폐질 기타 심신의 장애에 따라 공동동작을 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작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5. 踔激한 사상을 가진 자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자

본 조에 따라 금고수형자는 제외되고, 징역수형자만이 적용을 받는다. 누진처우는 금고에 적용하는 것과 징역에 적용하는 것의 2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자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본 조는 금고 외 5가지의 제외사유를 두고 있다.

제1호의 경우는 형기 1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발분노력하여도 상급에 달할 전망이 없어 실망하여 자포자기에 빠질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형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형기의 제한을 두지아니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미만은 제외해야 하며, 1년 미만은 너무 수형자에게 있어 불이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개형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질주의에 따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판결이 있어 1년 이상에 이른 경우에도 누진처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취소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형기 6개월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집행유예의 취소는 아니지만 당연 취소되게 된 경우에는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누진처우를 적용하여 수형자의 발분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제2호의 경우는 입감시 65세로 작업에 감당할 수 없는 자만이지만 또는 오랫동안 입감하여 65세에 달하여 작업에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외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면 발분노력하여 1급에 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5세에 달하여 작업에도 감당할 수 없게 된 자를 제외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호의 경우

4)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5월호, 1935년 5월, 6면.

는 전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처우규칙이 작업에서도, 일상의 교화 훈련에서도 활발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제3호의 입산부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수태 후 150일 이상과 분만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4호의 경우도 발분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단체훈련에도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제5호의 경우도 4의 이유에 따라 제외된 것이다. 그런데 징역수형자에게 대해 5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누진처우를 적용하는지, 이 5가지의 제외가 제한적인 것인지 또는 열거적인 것인지의 문제의 해결은 본령 제1조의 목적에 따르기 어려운 자가 있으면 5가지의 제외 사례 외의 경우에도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제3조 본령의 적용을 받는 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본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외에 조선감옥령 시행규칙에 의한다.

이 제3조에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2) 수형자 분류

제4조 ① 새로 입감하는 자인 때는 그 개성과 심신의 상황, 경우(境遇), 경제, 교육의 정도 그밖에 신상에 관한 조사를 위해 가능한 한 독거구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은 2개월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개성심신의 상황, 그 밖의 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제9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본 처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처우상 상당한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행형은 말할 것도 없이 개별처우의 원칙 위에 있다. 그래서 수형자의 개성, 심신의 상황, 경우, 경력, 교육 정도 그 밖의 사유를 조사하고, 정신과 육체의 결합 그 밖에 개인적 관계에 대해 조사하거나, 또는

제5조 수형자의 개성 및 심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교육사회학 등의 방면에서, 즉 과학의 힘에 의해 개성심신의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적당한 분류개별처우를 한다.

제6조 신상조사 중의 수형자의 처우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가능한 한 개성의 발현을 저지하는 것에 주의할 것
2. 수공업(手工業)을 과하여, 개성능력 등 부과하는 작업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관찰할 것
3. 작업의 부과 및 전업에 관한 희망은 이를 허가할 것

제1호의 경우 개성관찰이 중요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처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 중에는 개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2호는 앞으로 그에게 적당한 작업을 결정하기 위해 수공업(手工業)을 과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제7조 형무소는 신상조사상 필요한 때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각 지방사무소의 재판소, 검사국, 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고용관계자 등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설명생략).

제8조 신상조사에 부하는 때는 신상조사표를 비치하고 여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신상조사에 부하고 그 조사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은 나중에 처우에도 모든 점에 대해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 제9조 ① 신상조사를 종료한 때 형무소장은 본인에 대해 본령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형무소장은 본령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 본령의 취지를 알려야 한다.

소장이 신상조사에 기초하여 결정하지만 제2조의 5가지 경우는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신상조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소장은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누진처우의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발분노력을 통해 책임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 ① 본령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는 이를 초범자 및 누범자로 분류한 가운데, 죄질, 연령, 형기, 그 밖의 신상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 기초하여 처우에 상당하는 분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1조 제1항에 열거한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입소 시 모든 점에 대해 조사하고 상당한 분류를 하며, 적당한 처우를 실시하여 상급에 달하였기 때문에 2급 이상자에 대해서는 분류의 필요가 없다.

3) 누진처우

가) 계급 및 편입

제11조 ① 처우는 아래 계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제4급
 제3급
 제2급
 제1급
 ② 전항의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각 수형자에게 휘장(徽章)을 사용한다.
 제12조 수형자는 제4급부터 순차 각 계급을 거쳐 진급하며, 책임관념이 두텁고 공동생활에 적응할 전망이 있는 자는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위의 계급에 진급시킬 수 있다.

진급순서는 4급, 3급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책임관념이 풍부하고 공동생활에 적응할 전망이 충분한 자는 처음부터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3급에 편입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4급에서 2급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편입을 학자는 도약(跳躍)누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형무관회의의 의결에 부치는 것은 남용을 방지하고, 다른 수형자에게 불평등을 가지게 하여 그 때문에 누진제의 통일효과를 파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나) 누진

제15조 계급 누진은 각 계급에 부과하여 정하고 있는 일정한 책임점수 전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매월의 행형성적에 따라 득점으로 소각한 때 이를 실시한다. 다만 인격(人格)점수의 합계점수가 그 계급에서의 책임점수에 2분의 1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규칙은 점수제를 채용한 것으로 각 계급에 대해 정해진 책임의 점수 (1) 초범자는 형기를 월(月)로 환산한 것을 2배로 하여 곱한 것이 그 책임점수이다. 또한 (2) 누범은 형기를 월(月)로 환산한 것에 2.5배로 하여 곱한 것이 각 계급의 책임점수이다. (3) 무기형의 경우는 형기 20년으로 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제16조).

정해진 책임점수를 매월의 행형성적에 의한 소득점수로 소각하여 전부 소각한 때 진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점수는 (1) 인격(人格)점수 최고점 6점, (2) 작업점수 최고 6점으로, 두 가지 모두 합쳐서 매월 소득점수의 최고는 12점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4급에 편입될 때 잔형기가 1년이라고 가정한 경우는 제3급으로 진급하는 책임점수는 초범자의 경우는 24점으로 만점 12점을 얻어 소각하면 2개월 만에 제3급으로 진급한다. 2급의 책임점수는 20점으로 그 20점을 소각하면 제2급으로 진급한다. 누범자의 경우는

2.5배로 하여 책임점수를 정하고 그것을 소각하여 가는 것은 전술한 것과 같다. 그렇지만 제25조 단서에 따라 인격점수의 합계점수가 그 계급에서의 책임점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는 진급할 수 없다. 전술한 초범자의 예로 하면 제3급에 진급하는 경우 책임점수는 24점이다. 만약 매월 작업점수 6점, 인격점수 2점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3개월 후에 제3급으로 진급할 수 있지만, 인격점수 3개월을 합해서도 6점밖에 되지 아니하고 책임점수의 2분의 1에 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경우는 책임점수를 소각하여도 진급할 수 없다. 만약 가령 매월 인격점수 2점밖에 얻지 아니했을 때는 6개월을 필요로 하고 제3급으로 진급하게 된다. 인격점수는 개선의 상태, 조행(操行)의 좋고 나쁨, 책임관념 및 의지의 강약, 작업점수는 작업의 근면 여부 및 그 성적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에 대해서는 작업 및 학업의 근면 여부 그 밖의 성적을 표준으로 하여 작업점수를 결정한다(제17조). 그리고 제1급에 도달하여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자에 대해서는 달리 책임점수를 정하지 아니한다(제16조).

제18조 책임점수 소각의 방법은 책임점수로부터 매월의 소득점수로부터 매월의 소득점수를 점차 공제하여 소득점수에 나머지가 발생하면 다음 계급에 책임점수로부터 이를 공제한다.

사법성령에 의한 처우령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나머지가 발생한 때는 다음 계급의 책임점수에서 이를 공제하지만, 조선처우규칙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진급이 기계적으로 흐르기 쉬운 결점을 가진 누진처우에 대해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① 진급의 결정은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다만, 진급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달 초에 진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즉시 본인에게 고지한다.

책임점수가 전부 소각된 때는 즉시 진급의 결정을 해야 하지만 다수의 수형자에 대해 이를 실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단시일 동안의 결정은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비 지불금 계산고 고지 등의 관계상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급의 결정이 있는 때는 다음 달 말일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진급한 것으로 한다면 본인에 대해 불이익이 되므로, 결정이 있는 때는 그달 초에 진급한 것으로 하고 있다. 누진결정의 고지는 그 결정의 이유와 함께 이를 위해 필요하다.

제20조 진급한 자에 대해 그 소속계급에 대한 처우 내용을 개시하고,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이의 수행을 서약하도록 한다.

앞에서 누진제는 처우의 완화와 책임의 진급과의 조화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계급의 진급에 따라 책임이 가중된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본 조는 그 계급

에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책임수행의 서약이라고 불리운다.

제21조 형무소장은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수형자에 대해 정상에 따라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진급시킬 수 있다. 수형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원계급으로 복귀시키고 그 조건을 이행한 때는 진급을 확정한다.

진급은 원칙적으로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해서 실시하지만 소각하지 아니하여도 상급으로 진급시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있고, 또 어려운 사정으로 본인은 열심히 하여도 소각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진급시킬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은 여러 가지로 사정에 따라 결정하면 좋다. 예를 들면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작업성적 6% 이상을 지속하는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원계급으로 복귀시키고 이행하면 진급을 확정한다. 이 가진급을 남용하면 누진제 그 자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형무관회의에 회부하는 것이다.

제22조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수형자에 대해 진급이 너무 빠르다고 인정하는 때는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내에 체급(滯給)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점수의 계산을 한다.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하였더라도 그 자의 전 인격에서 보아 너무 진급이 빠르다고 인정되는 때는 형무관회의의 회의를 거쳐 6월 이내에서 체급(滯給)시킬 수 있다. 그런데 최대 6월을 체급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전인격에서 진급할 자격이 되었다고 인정되게 된 자는 본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제23조 수형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득점표를 교부하여 본인으로 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본 조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몇 점으로 진급한다... 보다 한층 분발... 이라고 분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본인에게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4) 구금 및 계호

제24조 제4급 및 제3급 수형자는 이를 혼거구금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는 독거구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상 그 실행이 곤란한 것은 분명하고, 독거구금이 그 정도까지 교화상 중요시되지 아니하는 오늘날 독거구금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또한, 누진제는 범인을 점차 사회에 근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동생활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등의 이유에서 혼거제를 제4급, 제3급에 도입한 것이다.

제25조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주간에는 혼거하고, 야간에는 가능한 한 독거구금한다.

본 규칙의 제1의 목적으로 당연한 구금형태이다. 주간에는 혼거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정숙(靜淑)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급에서 사회의 실상에 가까운 생활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6조 ① 제1급 수형자는 특별한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장소 내에는 거실 시정(施錠)을 아니할 수 있다.

본 조는 행형에서 자치제 채용이다. 발분노력하여, 교화천선되고 보다 한 발 더 사회생활에 가까이하도록 하는 제1급 수형자를 다른 자와 구별하여 별도로 수용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방법이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책임과 자각에 의해 자신의 것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하도록 한다. 그 하나가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실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27조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신 및 거실수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본 조도 전 조와 마찬가지로 '자치'의 가장 구체화된 것이다. 오랫동안 교화의 과정을 거치고 발분노력을 하여 제1급이 된 자를 의심의 눈으로 검신 또는 검방수검 등을 하는 것은 본인의 심정을 해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본 조는 무엇인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신뢰하고 점차 자중하도록 하기 위해 검신, 검방, 수검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1급 수형자는 형무소의 규율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담을 할 수 있다.

교담금지는 예로부터 감옥의 철칙과 같이 채택되어 있다. 펜실베니아제는 엄정독거를 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건강을 해하고 특히 정신병에 걸리게 하며, 자살을 기도하는 자가 많게 되며 또한 한편 작업을 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켜 폐해를 발생해 왔다. 그래서 뉴욕의 오번감옥의 소장이었던 에람 린즈(Elam Lynds, 1784-1855)는 새롭게 주야독거를 폐지하고 독거는 야간에 한하고, 주간에는 공장에서 혼거구금하여, 혼거구금의 악풍감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담을 금지하였다. 그것이 교담금지의 시초이며, 그 이후 각국에서 교담금지를 시행하였다.

악풍감염을 막는 한편 음모, 폭동, 도주 등 모든 감옥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교담

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에서 교담은 필요하다. 1급 수형자는 늦던 빠르던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일단으로 규율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담을 허가하는 것은 합목적적이다.

제29조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중 형무소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걸어도닐 수 있다.

본 조는 사회사정에 따른 것이다. 사회의 공장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휴게시간에는 공원을 산보하든가, 햇볕을 쬐거나 좋은 공기를 마시고 기분을 새롭게 하거나 또는 일에 종사하는 등은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것이다. 감옥에서 장소를 지정하여 걸어 다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30조 ① 제1급의 수형자는 형무소장에 대해 그 계급의 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형자 중 전항의 규율에 의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는 그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본령에서 정하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1급 수형자는 특별한 장소에 수용하여 그 거실에 시정도 하지 아니하고(제26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신 및 거실수검도 하지 아니하며(제27조), 교담도 허가되고, 휴게시간 중 지정된 장소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도 허가되는(제28조, 제29조) 등 상당한 자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제1급자는 가장 빨리 위험성도 없는 자로 혹은 어느 정도 신뢰를 형무소장이 걸어두기 위한 것이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 하에서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것을 본조에서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제1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 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해서는 우대는 물론 징벌을 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조는 제1급 수형자 전체를 단위로 하여 그 급의 질서유지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우고 있다.

5) 작업

제31조 신상조사를 종료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수형기간 중 취업하도록 하고 작업을 과한다.

형무소에서는 징역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작업을 과하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고, 작업 또는 그 작업부과 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과하는 것은 현대 형무작업의 목적에 따르지 아니하는 결과에 빠지기 쉽다. 작업이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본인에게 적합하고 고통도 주지 아니하며 장래 독립하여 생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작업을 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신상조사, 특히 과학적 심사를 기초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는 합목적적으로 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제32조 제4급 및 제3급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상 그 밖에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을 부과하는 데는 형무소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것이 본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확신하고 과한 것을 숙달의 경지에도 도달하지 아니하고 전업을 남용하여 허가해서는 형무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불이익을 가져온다. 그 때문에 제4급, 제3급으로 입소후 부과된 작업에 숙달되지 아니한 자에게 원칙적으로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수형자에 대해 매월 작업장려금계산고 중 아래 범위 내에서 이를 자기의 용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4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5분의 1 이내
2. 제3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4분의 1 이내
3. 제2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내
4.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

본 조는 상여금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근면의 바람, 즉 발분노력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한편 수형자는 경제생활의 낙오자인,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상여금으로 형무소 내에서 경제생활의 훈련을 하게 하여 자기용도의 물건을 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제34조 ①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작업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용구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때는 작업상여금계산고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누진처우규칙은 자기작업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작업이란 규정된 작업시간 이외에 예를 들면 면업일(免業日) 등에 영치금으로 스스로 재료를 구입하고 도구도 자신이 산 것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이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상당한 가치가 따라 매각하여 그 금액은 영치금으로 보관한다. 자기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또는 사용에 익숙해진 도구는 석방후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작업용구의 사용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용도 물품구입은 월액계산고이지만 이 작업용구 구입은 전부 또는 일부의 상여금으로 하여 작업용구 구입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 영치금으로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35조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 그 과해진 작업에 숙련된 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특히 전업을 허가할 수 있다.

하나의 작업에 숙련되고 나아가 다른 작업에 숙련하는 것은 석방 후 사회복귀에 매우 이익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개성에 따라 다른 작업을 익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의 작업만에 전념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 장래에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과해진 작업에 숙련하여도 전업을 허가하는 것이 합목적이다.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으로부터의 희망이라면 허가가 가능하다.

제36조 제1급의 수형자의 취업에 대해서는 계호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는 제1급 수형자의 취업에 계호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계호상 책임은 제1급 수형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6) 교화

제37조 제4급 및 제1급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주로 개별교회를 실시한다.

교회에는 총집교회와 개별교회가 있다. 본조의 제4급과 제1급 수형자에게 주로 개별교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입소 당시와 석방 직전에는 교회에 대한 감동력이 크기 때문에 개별교회를 주로 한 것이다.

제38조 ① 라디오 및 축음기의 청취는 제3급 이상 수형자에 한해 이를 하고 그 횟수는 제3급에 대해서는 매월 2회로 하고, 계급의 진급별로 매월 1회를 추가한다.

② 교화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디오, 축음기 청취를 허가하는 것은 정신적 교화와 사회교화로 수형자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위안에 도움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세가지를 합목적으로 하여 계급에 따라 횟수의 제한을 둔 것이지만 특히 교화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예를 들면 유익한 방송인 경우 또는 출정미담(수형자)을 녹음한 레코드가 있어 교화상 유익한 경우에는 제4급 수형자에게도, 또 제한횟수에도 구애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내에서 집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회에는 형무소장, 교회사, 교사 그 밖의 직원이 여기에 입회한다.

집회를 통해 상호 간 의견교환, 지식 연마 등을 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그것까지 자치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집회를 이용하여 오락회를 개최하고, 라디오와 축음기 등 유익한 것을 듣게 하여 즐겁게 밝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교화 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소년수형자에게는 집회의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년 등은 선생과 생도와의 관계와 같이 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모여서 교화하는 자와 교화되는 자의 접촉을 밀접하게 하여 사이가 좋은 원만한 기분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교화 상 필요할 것이다. 본 조에 따라 형무소장, 교회사, 교사, 그 밖의 직원이 참석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계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 한 수형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집회가 실시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입회자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상대 또는 집회석상 때로는 진심으로 유익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회자를 두는 것일 것이다.

제40조 ①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도서실에서 문서도화의 열람을 허가한다.

② 도서실에는 적당한 신문지와 잡지를 비치해 둘 수 있다.

제1급 수형자는 도서실에서 유익한 서적의 열람이 허가된다. 이것도 1급 수형자는 위험성도 없고 가까운 장래에 세상에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사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처우의 완화가 실시된다.

제41조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내에서 경기, 오락 또는 운동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는 수형자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명량한 정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기, 오락, 운동회 등은 자외선·적외선을 많이 받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없다. 특히 감옥은 실외에 나올 기회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울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것도 이상 운동에 의해 완화되고, 또 운동경기는 자신을 잊고 단체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높은 정신을 양성하며, 석방 후에는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하게 되고, 교화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위안도 된다. 경기, 오락 등은 심신을 단련하고 명량한 정신을 만들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반면 위안이 되지만, 이를 남용하면 형벌의 존엄은 문란에 빠지기 쉽다. 이 의미에서 경기, 오락 또는 운동회를 제2급 이상의 자에게만 매월 2회 이내에서 허가한 것이다.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교육이 되는 것은 학교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제3급 이하의 자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동시에 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제42조 ① 제3급 이상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학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용품 구입을 위해 필요한 때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 자기용도물품구입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년에게는 제1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용품 사용이 제3급 이상에게 허용된다. 학용품 구입 시에는 월액의 상여금으로 부족한 때는 계산고에 따라 구입이 인정된다.

제43조 ①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독거실에 수용하는 때는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사진의 비치할 수 있다.
 ② 교화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의 사진 비치도 가능하다.

이것은 가정을 그리워하여 개전을 촉구하거나 또는 석방 후에 사회생활로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재감 중에서도부터 긴밀하게 도모하는 수밖에 없다.

독거방에 한해 허가하는 것은 혼거방에는 비평의 대상이 되거나 잡다한 화제가 되거나 하여 종종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44조 ①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자기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가족에게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사진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은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의 취지도 가정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석방이 가까운 제2급 이상 수형자에게 정상에 따라 허가하는 것이다. 정상에 따른 경우란 예를 들면 가정에는 어머니와 수형자의 여동생만이 있어 수형 중인 자식의 신상을 걱정하는 경우에는 건강한 수형 중의 자식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내면 어머니는 얼마나 안심할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허가해야 할 것이다. 정상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접견 및 서신

제45조 ① 접견 및 서신의 발송횟수는 제4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1통, 제3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2통, 제2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1통으로 하고, 제1급 수형자는 수시로 접견 또는 서신의 발신을 할 수 있다.
 ② 제2급 이상 수형자로 교화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항이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는 접견서신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처음의 필요한 용건만의 용도에만 그치기에 횟수가 적지만 상급에 대해 석방시간이 가까운 자에 대해서는 돌아가야 할 사회와 원활한 연락을 가지게 하여 사회복귀를 완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접견과 서신의 횟수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된다.

제46조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접견시 특히 입회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급 수형자는 상당한 자치훈련이 행해지고, 가까운 장래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엄중한 감시하에 접견을 실시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감시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본인의 사회복귀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회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IV. 이후의 전개

조선행형누진처우령은 해방 후 1948년 「우령수형자 석방령」의 시행 등으로 이어지다가 1956년 10월 29일 「행장심사규정」(부령 제20호)과 1957년 9월 25일 「수형자 상우규정」(부령 제23호)이 제정시행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분류처우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처우이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비과학적 측정장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5)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합리화·과학화하기 위해 1964년 7월 14일 「수형자 분류심사방안」(예규교 제39호)을 제정하고, 수형자이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분류하여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응을 기하였다. 1969년 5월 13일 분류심사와 행장심사를 인원 화한 「교정누진처우규정」(법무부령 제111호)이 제정시행되어 분류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행형법 개정을 통해 수형자분류처우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991년 3월 14일에는 「교정누진처우규정」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개정하여 수형자 처우는 분류처우와 누진처우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형집행법 관련 법령에는 누진처우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분류처우로 단일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하고 교정시설 경비등급을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4등급으로 구분하여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분류수용하여 차별화된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금용명, 교정학 - 행형론과 수형자 처우 -박영사, 2021년 2월 25일
 김희수, 행형법학, 동민출판사, 1991년 8월 31일
 나카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 저 / 금용명 역,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교도소연구소, 2023년 6월 10일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5월호, 刑務界社, 1935년 5월, 6-9면.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6월호, 刑務界社, 1935년 6월, 19-21면.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7월호, 刑務界社, 1935년 7월, 22-26면.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분석 중심) (상)



엄동철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목차

- 제 1 장 서론
- 제 2 장 법무시설 조성 이론적 고찰
- 제 3 장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 사례
-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법무시설은 검찰청,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257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정시설 57개 기관이 상대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국제인권 기준의 강화로 수용실의 면적이 협소하여 교정시설의 조속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이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의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동법 제 54조에 따른 교환사업, 동법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 동법 제 59조에 따른 위탁개발사업이 있다. 교환사업은 법무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사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가 아닌 자가 대체부지에 대체시설을 신축하여 법무부에 기부채납하면 국가는 기존시설과 부지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양여하는 방식을 말하고, 위탁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개발하여 법무부에 관리전환 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무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유재산 개발사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이었다.

1999년 OO교도소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OO건설산업에서 대체법무시설을 조성하여 법무부에 기부채납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그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부지를 양여하였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됨으로써 건축 행정협의 지연, 사업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의 비능률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노후하고 협소한 OO교도소를 조기에 현대화 할 수 있었다는 큰 성과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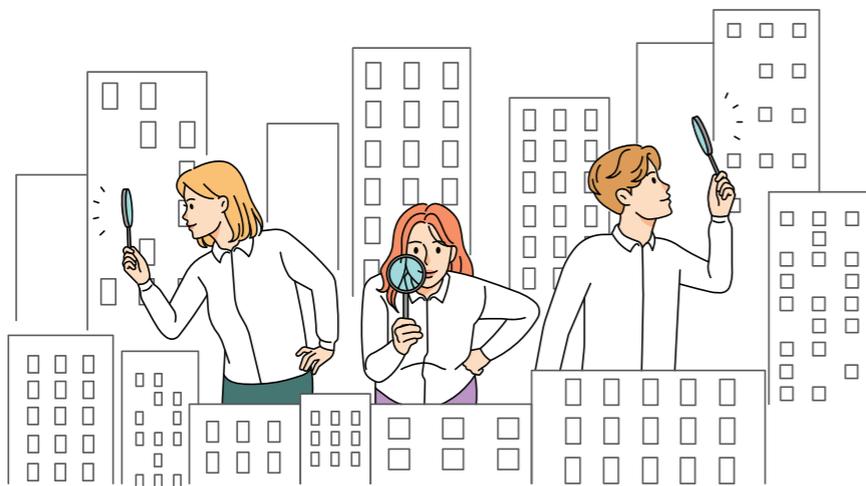
이 후 서울OO교정시설 이전과 OO법무시설 이전사업을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유재산 교환사업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서울OO교정시설 자체만을 이전 한 반면, OO법무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교환재산의 대상이 되는 OO구치소 외 서울OO지방검찰청, 서울OO보호관찰소, 법무·검찰 비상대기소까지 현대화 된 시설로 조기에 이전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조기에 시행한 서울OO교정시설 이전 교환사업의 경우 관리청인 법무부와 시행자인 OO구청, 시행대행자인 OO공사, 프로젝트금융회사인 (주)OOOO개발과 자산관리회사인 (주)

OOOO 등 복잡한 사업구도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OO법무시설 이전 교환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구도를 관리청인 법무부와 시행자인 OO공사만으로 단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교환방식의 국유재산 개발사업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재산과 신축 이후의 상호 재산 가치가 비슷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 위탁 개발방식은 기획재정부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법무부로 관리전환 후 그 기존 토지를 개발하여 대체시설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개발수익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재산과 신축 이후의 상호 재산가치가 사업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법무부에 제안 된 OO교도소와 OO구치소 이전 사업의 경우 기존 교정시설의 부지가격이 3조원에 달하나 신축 예정부지와 건축비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아 만약 OO교도소와 OO구치소의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법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이 국가예산을 활용하지 않고도 노후 청사를 조기에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예산사업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대규모 시설의 경우 또한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통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을 조속히 현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무시설 이전사업을 관련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 개발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 본 사업이 상호 재산가치의 차이,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상실, 이전 반대 민원 등으로 중단 될 경우 법무부에서는 다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국가적, 행정적 손실은 물론 노후시설 현대화가 지연되어 법무시설을 이용하는 직원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2007년도에 OO교도소와 OO구치소 이전 사업을 관련지자체와 국유재산 교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존 부지의 재산 가치 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도에 예산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따라 국유재산 개발사업으로 국가시설을 조성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건축물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한다.

법무부 소속기관은 총 257개로 검찰청 64개 기관, 보호관찰소 63개 기관, 소년원 및 비행 예방센터 29개 기관, 교정시설 56개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5개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정시설 56개 기관 중 20년 이상의 노후시설은 32개이며 신축이 필요한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 23개로 전체 시설의 41%에 달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신속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해마다 약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5~9개의 시설을 준공하고 있으나 예산으로 할 경우 사업기간이 예산 편성의 한계로 인하여 부지매입에서 설계를 거쳐 공사의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7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년 준공시설은 3~5개의 기관(전체시설 대비 2%)에 불과하여 기존건축물이 노후화 되는 비율(전체시설 대비 4%)보다도 적어 해마다 노후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노후된 시설을 신축하는 예산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고 등검찰청, 남양주지방검찰청, 정읍교도소 등 새로운 기관이 생겨날 경우 이들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하고, 신축사업과 관련된 예산제도 또한 2012년 이후 일반회계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신축사업 진행)으로 변경 된 이후 기금 부족으로 노후 된 건축물을 적기에 신축하기란 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정시설의 경우 국가보안목

표시설로서 최초 신축 시에는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 조성되나 교정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주변에 상가, 주택 등이 들어서고 마을이 형성(서울남부교도소, 성동구치소, 원주, 부산 등)되는 등 도심화 됨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이 도심 내 교정시설을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나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억 원에 육박하여 한해 예산이 1,700억 원에 불과한 법무부의 예산으로는 이전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비록 국가예산으로 이전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해마다 15개 정도의 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이전에만 매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사업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므로 청사 이전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노후화된 도심의 교정시설을 이전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심의 균형발전을 높이고자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방식을 도입하여 OO교도소 이전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사업 추진 중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됨으로써 건축 행정협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2007년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은 새로운 사업모델인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국유재산 교환방식이란, 국가재산인 기존의 교정시설 부지를 민간재산인 이전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한 건축물과 교환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기존 교정시설이 도시화됨에 따른 지가의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져 민간에서 투자한 도시외곽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비용과 그 부지에 신축한 건축물비용을 합하더라도 기존 교정시설 토지금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기에 별도의 국가예산 투입이 없어도 법무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어 짧은 시간 내에 건축물의 준공이 가능하여 국가기관으로서 단기간에 대규모 노후시설을 신축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법무부 최초로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을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준공함으로써 현재 교정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OO법무시설 이전사업 또한 OO구치소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OO교정시설 이전 교환 사업 추진 시 관리청인 법무부와 사업시행자인 구로구, 사업시행대행자인 OO공사, 특수목적회사인 (주)OO누리개발, AMC 등 복잡한 사업구도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 법무시설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교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다.

국유재산 교환사업의 성패는 교환재산의 정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능한 기



존 교정시설의 부지 가격에 맞추어 신축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교정시설 이전사업의 진행에 있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가변동, 설계변경 등 사업비 변동 요인이 많아 교환 양자의 재산가치를 추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저자는 국유재산 교환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재산 가치가 교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업시행 초기부터 시설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관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사업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유재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절차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조기에 준공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이용한 건설사업을 많이 활용한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군관사 및 병영시설 조성에, 교육청에서는 OO초등학교 등 학교시설 조성에 BTL 사업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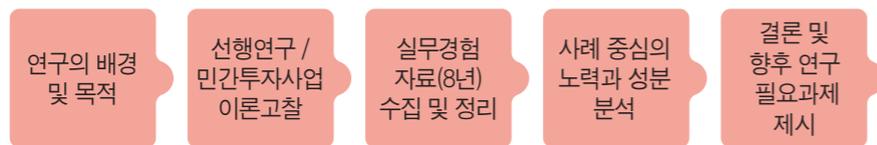
민간투자사업방식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BTL, BTO, BOT방식과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기부대양여, 교환사업 및 개발사업 등이 있다. 교정시설과 같은 법무시설의 경우 일반 청사와 달리 시설운영권을 부여하기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BTL, BTO, BOT방식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대양

여방식과 교환사업 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관련된 연구는 이미 많이 다루어져있으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 전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할 경우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실 있고 현장감 있는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기부대양여와 교환사업, 위탁개발 사업 등 민간투자방식 중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활용한 법무시설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저자가 실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법무시설의 국유재산 개발사업에 국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인 고찰로 선행연구에서 소외 시 된 부분과 선행연구 이후의 정책 변화 등 변화요인을 파악하고 국유재산 개발사업에 관한 이론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저자가 담당하였던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단계별로 경주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재산 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향후 연구 필요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1.3 선행연구 고찰

민간투자사업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저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국유재산 교환사업에 관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교환사업 역시 큰 틀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논문들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손호익은 “민간투자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4)”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 재정사업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가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자본의 활용이 좋은 대안이나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논란, 높은 통행료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 조직 확보 등 검증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용의는 “BTL사업의 운영현황과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2013)”에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종전 BTO(Build-Transfer-Operate)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5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을 도입하여 학교, 사회복지시설, 군막사 등 공공시설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의 경험부족, 업체들간의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개의 학교 운영사, 교육청 관계자, 시행사 등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상수는 “군 BTL 사업 분석(2013)”에서 국방부의 BTL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기간 이후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작전, 전투 임무를 제외한 지원기능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이 극대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윤성중은 “국방분야 민자사업 확대 방안(2007)”에서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구조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구분되어지고 국방부에서는 생활관, 군인아파트, 관사 등은 BTL방식으로 사이버정보지식사업은 BTO방식으로 조성하며 국방 예산의 제약, 민간의 참여와 경쟁을 통한 국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분야의 민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적합성 확보, 해외 국방사례 검토,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신뢰의 유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종대는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법무시설조성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에서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례조사를 근거로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예산운영 측면과 사업관리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자료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민간투자사업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내용
손호익 (2014)	민간투자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김용의 (2013)	BTL사업의 운영현황과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BTL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운영사, 교육청 관계자, 시행사 등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김상수 (2013)	군 BTL 사업 분석	군 BTL 사업 시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기간 이후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
윤성중 (2007)	국방분야 민자사업 확대 방안	국방예산의 한계 민간경재를 통한 국방부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분야 민자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
김종태 (2011)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법무시설조성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와 예산운영 측면 및 사업관리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이상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그 주제 또한 주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된 것으로, 국유재산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여 저자는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알게 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상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중 특히 국유재산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단계별 절차를 정리하고 실무경험을 토대로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노력 및 그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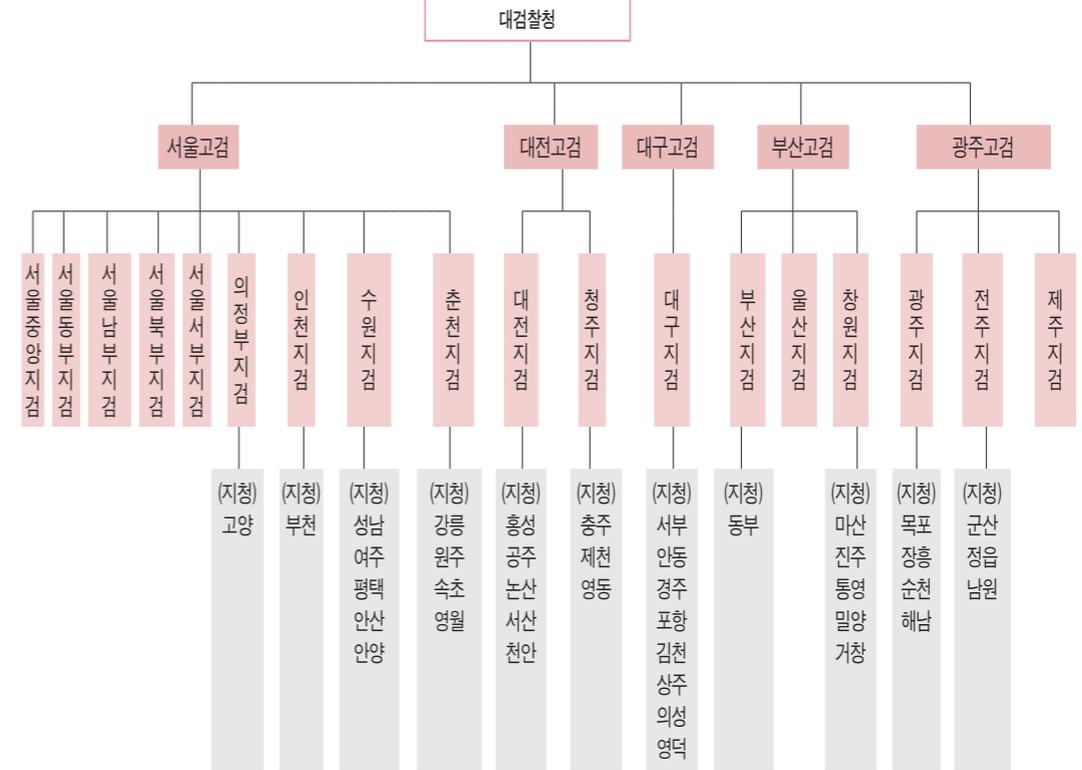
제 2 장 법무시설 조성 이론적 고찰

2.1 법무시설 조성 현황

2.1.1 법무시설의 정의 및 종류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국가시설로서 검찰청사, 교정시설, 출입국시설, 보호관찰소 등이 있으며 검찰청사는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0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직은 <표 2>와 같다.

〈표 2〉 검찰청 조직도



교정시설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56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그 조직은 <표 3>와 같다.

<표 3> 교정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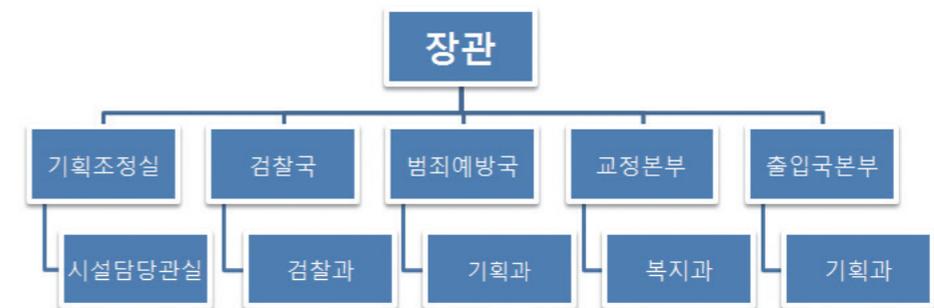
기타 출입국 시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19개, 외국인보호소 2개, 출장소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은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무시설에서는 검사, 검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수행자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이 있다.

2.1.2 법무시설 조성 현황

(1)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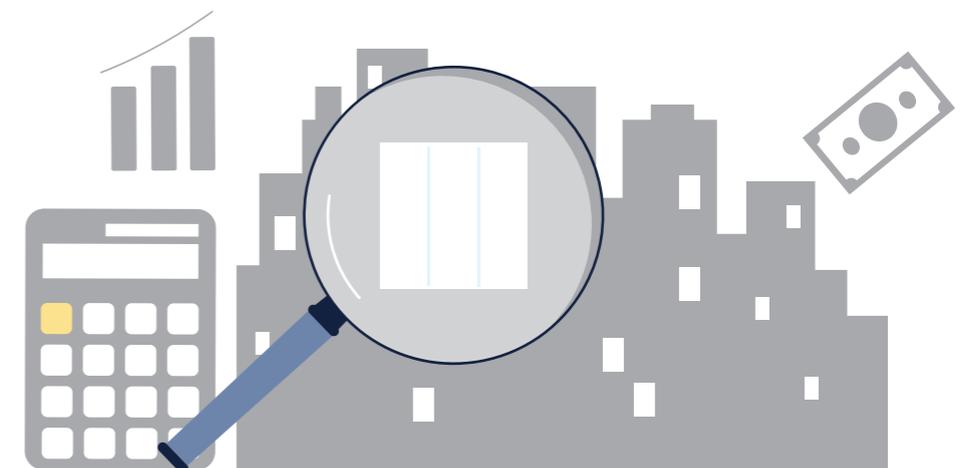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법무시설의 조성은 해당 실·국·본부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로 사업 추진을 의뢰하면 시설담당관실에서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되어있으며 그 관련 조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법무시설 조성 관련 조직도



(2) 예산

법무시설 조성 예산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국유재산 관리기금 1,570억 원과 일반회계 252억 원을 합하여 총 1,822억 원으로 설계 23건, 공사 31건의 법무시설을 조성 추진 중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법무시설 조성 설계 추진현황

구분	시설	용역	시설규모		비고
			부지	건물	
기금 (22)	검찰 (5)	전주지검	32,974	31,405	
		부산서부지청	18,182	20,676	
		거창지청	16,530	5,290	
		서울남부지검별관	기존부지	8,020	
		대구고검보육시설	990	1,000	
	범정 (6)	부산소년분류심사원	16,530	9,385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기존부지	3,975	
		전주소년원 증축	기존부지	9,371	
		부천보호관찰지소	1,447	2,314	
		거창보호관찰지소	3,300	1,179	
		영덕보호관찰지소	1,617	1,290	
	교정 (9)	경북북부(교)비상대기소	10,436	7,150	
		부산교도소 현대화	126,924	51,449	
		경북북부제5교도소	150,600	21,185	
		원주교도소	180,000	41,322	
		전주교도소	198,348	54,545	
		안양교도소	388,623	65,960	
		공주교도소 수용동	기존부지	1,010	
		상주(교) 비상대기소	"	1,700	
		춘천교도소 수용동	"	1,010	
		출입 (2)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11,570	9,917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기존부지	2,928	
예산	교정	부산교도소 현대화 기본조사	126,924	52,400	

〈표 5〉 법무시설 조성 공사 추진현황

구분	시설	공사명	시설규모		비고
			부지	건물	
기금 (26)	검찰 (8)	수원지검	33,924	42,969	
		천안지청	23,190	16,506	
		검찰특수기록관	6,610	9,330	
		광주고검 보육시설	740	640	
		경주지청별관	기존부지	2,193	
		부산서부지청	18,182	20,415	
		거창지청	16,530	5,290	
		대구고검 보육시설	990	1,000	
	범정 (6)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4,885	4,642	
		의정부보호관찰소	3,306	3,306	
		춘천소년원 생활관	기존부지	4,298	
		부산소년분류심사원	10,979	9,385	
		진주보호관찰지소	2,253	1,694	
		전주소년원	49,848	9,371	
	교정 (10)	대구교도소	269,857	66,019	
		속초교도소	119,473	19,830	
		거창구치소	160,818	19,833	
		제주교도소 수용동	기존부지	1,583	
		대전교도소 비상대기소	"	1,682	
		경북북부비상대기소	10,436	7,150	
		안양교도소	388,623	65,075	
		공주교도소 수용동	기존부지	1,010	
		춘천교도소 수용동	"	1,010	
		상주교도소 비상대기소	"	1,700	
	출입 (2)	제주출입국	7,194	2,994	
		울산출입국 향만분소	1,639	500	
예산 (2)	보호 (2)	광주소년원 리모델링	70,518	2,719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33,800	4,743	
교환 (3)	복합 (3)	문정법무시설 (서울동부지검, 성동구치소, 보호관찰소)	68,336	132,433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무부에서는 예산 사업과 별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성동구 치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신축시설과 부지를 성동구치소의 기존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의 문정법무시설 이전사업을 서울특별시 SH공사와 교환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2.2 법무시설 조성 방식

2.2.1 예산 사업

법무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청사를 취득하는 방식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예산사업이 일반적이다. 예산사업이란 각 부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 한 사업과 정치·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국회에서 제안된 사업 중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예산사업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집행하는 일반회계 사업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집행하는 국유재산 관리기금 사업이 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에 의한 예산사업이 주된 방식이었지만 무제한적인 예산투입을 방지하고 국유재산이라는 제한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목적으로 2012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으로서 2012년 이후의 청사 등 신축은 국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의 국유재산 관리기금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신축사업과 관련된 예산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증축, 리모델링과 같은 소규모의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진행된다.

2.2.2 국유재산 개발사업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시설 신축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신축에 집행하는 한해 예산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기관까지 신설되는 경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1개 사업을 완료하는데 민간자본을 활용 할 경우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예산사업으로 진행 할 경우 토지매수에서부터 설계, 준공에까지 7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단일 사업규모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방식이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된다.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예산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법

무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조기에 시설현대화와 과밀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국가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이란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민간에서 법무시설을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국가에서는 기존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이전하며, 민간에서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여 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저자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총괄하여 국유재산 개발사업이라 정리하고자 한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에 따른 교환사업과 동법 제13조(기부채납)와 제55조(양여)에 따른 기부 대 양여사업, 동법 제59조(위탁개발)에 따른 위탁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환사업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선 투자하여 조성한 법무시설과 그 해당 부지를 법무시설의 기존 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기부 대 양여사업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선 투자로 법무시설을 조성하여 법무부에 기부채납하면 법무부에서는 기부채납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 위탁개발사업이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자금으로 법무시설을 조성하여 이전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법무시설의 기존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2.3 민간 위탁 사업

민간 위탁 사업이란 민간에서 민간자본으로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그 기관의 운영 또한 법무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교정시설과 같은 국가기관을 민간에서 직접 조성하여 운영 또한 민간이 직접하는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그 기관의 운영을 법무부에서 하는 반면 민간 위탁 사업은 시설물 신축과 운영을 민간에서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간 위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2000년도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영교도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사업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법으로 정하는 시설 뿐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3 장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 사례

3.1 교환사업

3.1.1 근거 및 특징

교환사업이란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에 따라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른 일반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교환사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교환)에 따라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즉,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선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관련 시설물을 법무부에 인계하면, 법무부에서는 신축 시설로 직원과 수용자의 이전을 완료하고 기존 토지와 시설물은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신축 시설물과 토지, 신축에 투입된 용역비 등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의 가액과 기존 시설물과 토지 등으로 구성된 국가의 일반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상호 재산을 교환하게 된다. 만약, 교환차액이 발생한다면, 국가의 재산이 많을 경우 교환사업 대상자로부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으로 납부 받아 세입조치하고, 국가의 재산이 적

을 경우 교환사업 대상자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교환사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상호신뢰에 따라 교환사업의 사업비가 상호 재산가액에 맞춰질 수 있도록 성실히 맞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1.2 사업절차

국유재산 교환사업의 사업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국유재산 교환사업 절차도



(1) 필요성 인식

통상적으로 교정시설은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지역에 조성되므로 교정시설이 최초 건축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이 없으나 교정시설이 들어섬으로서 주변지역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도심이 팽창하면서 교정시설이 도심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도심화 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요구가 발생되고 도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재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교정시설을 이전 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지자체장의 개발 욕구가 맞물려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이전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다.

(2) 이전요구

관련지자체장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교정정책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교정본부와 이전의 필요성,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게 된다.

(3) 사업검토

지자체로부터 해당지역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 요구가 접수되면 우선 전국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노후도와 과밀수용도, 그리고 정책적으로 신설이 시급한 교정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지 단순 개보수나 증축으로 시설노

후화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다.

교정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사업규모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국가예산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할 경우, 해당 교정시설 부지가격이 대체부지와 건물신축비용에 근사하다고 판단되어 교환사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 할 경우 해당지자체에 대체부지의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교정시설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게 될 대체부지 몇 곳을 선정하여 법무부에 교정시설 부지로서 적합한지를 의뢰하게 되고 법무부에서는 여러 후보지의 현장실사를 거쳐 해당지자체와 함께 교정시설의 이전 부지를 확정하게 된다.

(4) 사업방식 결정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사업방식, 관련법령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해당사업의 시행이 교환사업으로 시행함이 최상이라 판단되면 교정시설 이전사업을 교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

(5) 시행자 지정

대규모 교정시설의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환사업의 시행자로 가능한 기관 중 사업시행 경험과 인력 및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서울OO교정시설 이전 교환사업은 OO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OO구에서 OO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 대행을 위탁하였으며, OO법무시설 이전 교환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OO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6)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와 교환사업의 사업규모, 설계 및 시공관리, 교환재산의 평가방법과 시기, 차액정산,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법무부와 사업시행자간의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7)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토지보상, 부지조성, 설계 및 공사를 수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조달한 자본을 투입하여 용역과 공사를 발주하고 대가를 지

급하는 등 발주자로서 본 사업을 관리해 나간다.

(8) 이전 및 평가, 교환

공사 준공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법무부에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나면 법무부에서는 기 수립된 수용자 이송계획에 따라 수용자 및 직원이 기존시설에서 신축시설로 이전을 하게 된다. 이후 협약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교환재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기존부지와 신축부지 및 건축물의 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교환사업은 마무리 된다.

3.1.3 사례분석

법무시설 이전을 교환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총 2건으로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은 2013년 완료하였으며 OO법무시설 이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2007년 11월 법무부 장관이 관리청으로서 사업시행자를 OO구청장으로 지정하여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사업 시행능력이 부족한 OO구청장이 OOOO공사 사장을 시행대행자로 지정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2007년 12월 OOOO공사에서 서울OO교정시설 이전 및 이적지 개발 PF사업을 공모하여 2008년 3월 OO건설컨소시엄이 PF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PFV)인 OOOO개발이 2008년 6월 설립됨으로써 본 사업을 위한 진영이 모두 정비되었다. 본 사업의 개요와 현황은 <표 6> 및 <그림 4>와 같다.

<표 6> 서울OO교정시설 이전 및 이적지 개발사업 개요

구분	대체교정시설 신축	이적지 개발	비고
시행자	OO구청(대행자: OO공사)	OOOO개발(SPC)	
위치	구로구 천왕동	구로구 고척동	
대지면적	228,100㎡	100,652㎡	
연면적	77,843㎡	442,646㎡	
주요시설	구치소, 교도소, 비상대기소	주거, 업무, 상업시설	
공사기간	2009. ~ 2011.		
사업비	1,500억 원	1조 6,322억 원	

[그림 4] 서울OO교정시설 이전 위치도 및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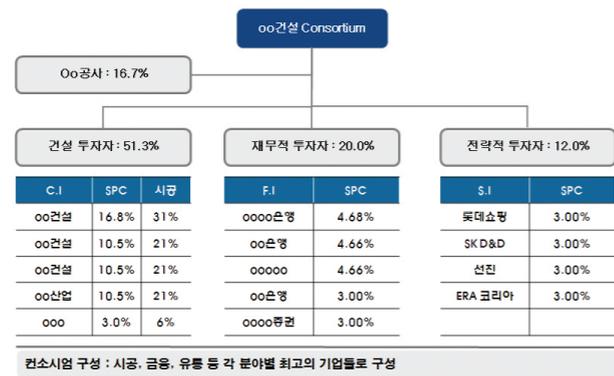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뉜다. 교정시설신축과 이적지 개발 PF사업을 주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인(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인 (주)OOOO개발과 자산관리와 운용, 부동산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인 (주)OOOO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 추진 법인

구분	PFV(프로젝트금융회사)	AMC(자산관리회사)	비고
법인명	(주)OOOO개발	(주)OOOO	
자본금	50억 원	5억 원	
주식	100만주(5,000원/주)	10만주(5,000원/주)	
목적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사업	자산관리, 부동산 개발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컨소시엄의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 추진 컨소시엄



따라서, 교환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구도를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 사업구도



즉, 법무부는 교환사업의 총괄 관리청이 되고 OO구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며 OOOO공사가 사업시행대행을 하였다. PFV와 AMC에서 부동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발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설계는 선진에서공사는 CI컨소시엄에서, 감리는 희림에서 수행하는 구도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의 설계는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까지 1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1년 9월까지 총 24개월이 소요되었다. 2011년 9월 준공 이후 10월 직원 및 수용자 이전을 완료하였고 2012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상호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2012년 2월 법무부와 OO구청이 상호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본 사업은 완료되었다.

▶ 다음호에 이어서

남성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으로 인한 중독과 회복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학술 연구 교수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주요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중독과정과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 중독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손상된 애착의 재구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중독에서의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과 애착 재구성으로 인한 중독회복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중독과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으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된 남성 9명을 선정하였고, 1 대 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개념, 19개의 하위 범주,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애착 외상, 마약 중독, 마약 중독에서 회복까지의 조건과 과정, 작용/상호 작용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각 수준의 관계를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매트릭스에 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의 마약류 사용과 중독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과 애착의 상실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피 과정이었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새로운 대상과 애착을 재구성함으로써 회복의 힘을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에서는 숨어 우는 상처 입은 아이의 자기 존재의 부활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 그리고 애착의 재구성과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애착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마약류 중독,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애착 외상의 경험, 근거이론 연구방법, 애착 회복 프로그램

I. 서론

한국의 마약 문제는 성인 마약류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밀매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대

검찰청(2021:152)자료에 의하면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18,050명으로 2019년보다 12.5% 증가하였다. 특히,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2020년 10대 313명(1.7%), 20대 4,493명(24.9)으로 2019년 10대 239명(1.5%), 20대 3,521명(21.9%)에 비해 3.2% 증가하였다. 또한, 광주·전남이 2019년 마약류 범죄 발생에서 가장 낮은 468명이었지만, 2020년 7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역과 계층의 경계가 사라진 한국의 마약류 문제는 경계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마약류 사용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었지만, 2020년 검거된 마약류 범죄자 중 조직폭력배 점유율은 40(0.2%)건으로 2018년 77(0.5%)건보다 감소하였다(대검찰청, 2021:191). 또한, 직업의 분류에서 특정 직업종사자들의 마약류 사용은 유흥업 126명(0.3%)과 예술/연예 62명(0.3%)이지만, 회사원 962명(5.3%)으로 오히려 훨씬 많았다(대검찰청, 2021:222, 229). 이 제는 마약류 사용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마약류의 유통은 고가의 천연마약에 비해 저렴하면서 강력한 합성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다크넷과 SNS 등을 통해 손쉽게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 특별위원회 '2020년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오남용 가이드'에서는 최근 5년간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펜타닐과 같은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마약성 진통제 투약자 수는 2011년 449만 478명에서 2019년 678만 7,210명으로 51.1% 증가하였다. 이 중 1년 동안 9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11년 38만 9,214명에서 2019년 62만 2,190명으로 59.9% 증가하였다(전영실, 김슬기, 배상균, 주현경, 2017:307). 진통제로 처방되는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은 청소년 및 국내 음악인들 사이에 힙합인의 전유물로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다.

2022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마약류 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엄벌주의의 공급 차단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감 명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8년에 중독치료시스템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통제를 위한 예방정책과 재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하기 있어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류 사용과 중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위험 요인을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낮은 자기 조절력,

절망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았고, 이러한 압도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기제로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김진희, 1998; 지영환, 2005:301).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를 우선시하고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 문화를 선호한다(현안나, 2012:306-307). 그래서 청소년 약물 사용은 쾌락 추구는 물론 사교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약물 범죄는 반사회적 행동인 비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Boys, Marsden & Strang, 2001:457). 초기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애착 결핍은 관계에서 정서적 단절을 하기에 청소년기 집단 문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대상에 대한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격대상이 내면으로 향하면 심리적 위축과 같은 자기 파괴적 성격을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어린 시절 애착 손상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김해진, 신현균, 홍창희, 2008:731; Strine at al., 2012:408-423)과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 남용 및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전경수, 2004:59).

이처럼 애착 외상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마약류를 사용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Allen, 2013; Courtois & ford, 2009). 애착 외상을 경험하였지만,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 발현된다면 외상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긍정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애착 외상 경험한다고 중독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애착 외상과 중독과의 관계는 개인의 대체 전략과 사회적 맥락 등에서 마약류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마약류 중독의 원인을 성장기 애착 외상으로 보고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애착 외상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적 대응 전략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를 규명하여 실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애착 외상과 마약 중독 그리고 회복과의 관계를 다뤘기에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교정정책 차원에서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예방을 돕는 회복 사범을 위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애착 외상에 대한 이해와 애착 재구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애착 회복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기에 교정시설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과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중독자들의 성장기 애착 외상의 경험이 마약 중독과 회복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의 구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 외상 경험과 중독

Bowlby(1969)에 따르면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애착은 양육자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유대관계로, 자아 존중감, 적응적인 대인관계, 일상생활 적응, 자아 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백지숙, 2000:127; 이순희, 김신정, 2012:455). 그리고 애착 외상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성이 높은 주 양육자와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과 같은 대인 간 외상을 의미한다(진미령, 신성만, 2016:31-53; Allen, 2012). 영유아를 보호하는 부모나 주 양육자의 반복적인 학대나 방임은 심리적 외상을 입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특히, 유아기 외상 경험은 청소년의 빠른 음주와 성인기 알코올 중독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한다(Fergusson, Boden, & Horwood, 2008:607; Oshri, Tubman & Burnette, 2012:252-253). 인간은 관계에서 연결된 존재로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개인들은 내적 분열과 함께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지니게 되고 애착 결핍으로 인한 상처에 대처하기 위해 타인들로부터 고립을 선택 한다.

애착 외상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감성 지능이 저하된다. 이때 건강한 애착 자극보다는 말초적이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애착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하여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과 같은 다양한 중독을 대안적인 방법으로 선택한다(Ossola, 2021:561).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애착 외상을 경험한 경우 청년 또는 성인이 된 후 관계 중독(최가연, 송현주, 2019:853-870), 스마트폰 중독(김옥희, 이경자, 한연현, 2017:95-114; 오순옥, 이정숙, 2018), 알코올 남용(김해진, 신현균, 홍창희, 2008:729-748; 윤명숙, 이재경, 2014:155-180; 윤명숙, 박아란 2019:1-13)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한다. 아동·청소년기 애착 외상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애착 외상 경험 또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우재희, 2014:299; Bryant & Veroffe, 2017; Dixon et al., 2009:1065-1068). 애착 외상으로 인한 돌봄과 사랑의 결핍을 의미하며 공허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약물과 같은 중독 물질로 애착 결핍을 보상하고자 한다.

2. 애착 외상 경험과 마약류 중독

애착 외상은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한 물질 남용과 상관관계를 보는 중단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은 물질 사용 장애의 위험 요인으로 결핍된 애착을 보상받기 위해 지속적인 약물 사용으로 안정 애착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자 하였다(Cihan et al., 2014: 532). 또한, 불안정한 애착과 약물 중독과의 상관관계는 성인기보다 청소년기에 더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Schindler, 2019:727).

Font와 동료(2018:179-180)들은 부모와 애착 관계 형성에 실패한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6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질에 중독되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높았다.

또한, 이들은 분노를 다루기 위해 약물 사용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했다. 약물 중독과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중독자들이 선택하는 마약류는 자신의 애착 결핍을 스스로 치유하고 보상한다는 왜곡된 직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Strathearn et al., 2019:737). 이는 마약류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심리·정서적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Dewi, 2022:8). 마약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은 애착 외상으로 인한 정서 지능의 저하 때문이라고 일부에서는 추측하기도 한다.

마약 중독에서의 회복은 문제 인식, 자기 존재의 새로운 인식 및 변화 노력, 주변 사람과 지역자원의 지지, 관계의 회복, 재발의 위험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Laudet, Morgen & White, 2006:33-73; Rumpf, Bischof & Hapke, 2002:122-127). 그래서 회복 과정은 문제 인식, 자기 존재의 새로운 인식 및 변화 노력으로 변화 과정이다(윤현준, 2013). 회복의 내적 요인은 삶의 의미(Csabonyi & Phillips, 2020:3-19; Katsogianni & Kleftras, 2015:11-24; Nicholson et al., 1994:24-28), 자신감, 자기 지식, 태도 변화, 치료의 일관성(꾸준한 치료), 현재에 사는 것(Jalali et al., 2019),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약물 없이 삶을 즐기는 것이고(Kaskutas et al., 2014), 외적 회복요인으로는 가족과 동료의 지지와 종교가 있다.

특히, 가족의 지지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asek et al., 2017; Mauro et al., 2017). 이는 가족기반 치료와 중독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종교의 영적 안녕감은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달성할 수 있는 회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김기태·정종화, 2019:115-148; 김수희, 정종화, 김원곤, 송진영, 2019:153-

180). 특히,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을 위한 12단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1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애착 외상은 마약 중독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LaBelle & Edelstein, 2018:123).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의 손상된 애착이 회복된다면 회복 탄력성이 생성되어 단약 효능감에 긍정적인 강화요인이 될 것이다(백형의, 한의영, 2014: 15; Lovimi et al., 2018:211). 애착 외상은 중독의 위험 요인이지만, 애착 외상으로 인해 중독에 빠진 중독자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애착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애착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이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함께 어린 시절의 애착 상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목적은 연구참여자의 원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김민선, 박인실, 2020:131), 이론이 정립된 기존 연구가 없을 때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기 위해 활용된다(이동성, 김영천, 2012:7). 그래서 연구자는 자료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와 맥락을 검토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개발할 수 있다(Corbin & Strauss, 2014).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애착 외상으로 인한 중독과정과 회복 과정에서 애착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마약류 중독과 애착 외상의 이론적 개념이나 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이다. Strauss와 Cobin(1998)은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와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선정을 위해 마약류 중독회복자 모임 관계자들에게 연구참여자 선정에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Cobin(2004)의 이론적 표본(theoretical sampling) 방법과 눈덩이 표본 추출(snow-balling sampling) 방법에 근거하였다. 선정기준은 ① 아동·청소년기에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들과 사이에 겪었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하위요인을 각각 5문항 20문항 5점 척도로 측정

하여 60점 이상인 자, ② 약물 사용 8년 이상이고 단약 기간은 1년 이상인 회복자를 눈덩이 표집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기준 ①과 ②을 모두 만족한 9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연령	직업	사용 기간	단약 기간	사용 마약	외상 대상
연구참여자 1	40	자영업	15년	5년	필로폰	부, 형
연구참여자 2	47	자영업	13년	7년	필로폰	부, 모
연구참여자 3	51	자영업	20년	10년	필로폰	부, 모
연구참여자 4	39	자영업	11년	2년	필로폰	부
연구참여자 5	43	회사원	19년	3년	코카인	모
연구참여자 6	47	회사원	4년	4년	필로폰+대마	부, 모
연구참여자 7	38	자영업	8년	8년	필로폰	부, 모
연구참여자 8	40	자영업	9년	6년	필로폰	부
연구참여자 9	35	회사원	10년	1년	LSD	부, 모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0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과 1대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원자료를 구성하였다. 심층 면담은 1인당 4회 회당 평균 6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절차와 방법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질문과 주제, 언어적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문헌 고찰과 자조 모임 관계자들과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사전검사 단계이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의 애착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기 애착 외상을 평가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 등(1998)이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CTQ)을 이유경(2006)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론적 표본을 위해 2차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심층 인터뷰와 분석 작업을 위한 표집 단계이다. 연구자는 근거이론 연구의 원칙인 포화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애착 외상이 마약류 중독 그리고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범주와 개념이 충족될 때까지 인터뷰를 반 구조화(semi-structured) 된 질문을 하였다. 모든 내용은 사전동의를 받아 녹음하여 전사한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하였다.

원자료의 포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동료 지지집단의 확인을 거쳐 근거이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의 반 구조화 된 질문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2> 인터뷰 질문

질문 단계	질문 내용
도입 질문	인구·사회학적 정보 질문
주요 질문	1. 어린시절 부모와 관계는 어떠했나요?
	2. 애착 외상 경험이 마약류 사용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3. 애착 외상 경험의 변화가 마약류 회복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정리 질문	마약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Corbin과 Strauss(2014)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4)이 제시한 근거이론은 자료의 유형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분석하는데,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의 분석절차에 따라 자료 분석을 진행한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 자료의 현상, 현상에 기본 단위로서의 개념, 현상을 대표하는 범주 발견, 발견한 범주에 대해서는 속성과 차원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며, 축 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발견한다. 또한, 자료의 통합을 도와주는 기법을 Corbin(2004)의 메모 사용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 코딩 대신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매트릭스, 핵심범주 순으로 구성하고, 개방 코딩을 구성한 범주들은 가족 수준, 근린 수준, 사회 수준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조건이 생성된 후 작용/상호작용의 연결을 통해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매트릭스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핵심범주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기술적 요약 메모와 메타포(metaphor)를 활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본 연구는 어린 시절에 학대와 방임과 같은 애착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이 마약사용과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한 것으로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연구참여자들의 정보 보호와 연구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성명은 물론 직업, 거주지, 직업 등을 모두 익명으로 표시하였

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 게시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았다. 공지 내용은 연구자는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 재현되어 심리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또한, 중도에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활용하지 않는 보존과 폐기 등 모든 상황을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Guba와 Lincoln(1981)의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등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와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사전 인터뷰를 하였으며, 인터뷰 종료 후 경험맥락의 대화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였다.

또한, 추가 질문을 통해 내용적 포화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확인 절차를 가졌다(Padgett, 2016).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방법을 활용하였다. 메모는 모든 인터뷰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사용하였으며, 노트 두 권 분량의 메모를 통해 애착 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지집단 구성으로 접근하였다(Lincoln, Lynham & Guba, 2011:37-128). 동료지지 집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근거이론 연구자 1명, 마약 중독 회복 연구자 1인을 동료지지 집단으로 구성하여 자문받아 수정하였으며, 언어적 일관성을 위해 언어적 감수를 받았다.

특히, 연구자는 Mathison(1988:13-17)가 제시한 삼각 측정법(Triangulation)으로 접근하여 자료 분석과 기술이 끝난 후 동료 지지집단과 교차 검증을 하여 자의성 여부 등을 검증 받았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결과 그대로 파일에 담아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개방 코딩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자료를 사건 단위 분석을 하여 범주 53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유사성 차원에서 재결집하여 19개의 하위 범주를 6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6개의 범주는 돌봄 상상력의 박탈, 자기 보호를 위한 은폐, 반동적 지지의 거부,

어디다 해소하지 못하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다 나한테만 했어요. 형제 들 중 유독 나한테만 더한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못하고... 더 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는 유기 불안과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불신하며 살았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2는 부모는 물론 형제로부터도 유기 불안을 느꼈으며, 연구참여자4는 초등학교 때 교사에게 따뜻한 돌봄과 지지를 받았지만, 부모에게 버려진 것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사에게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매달렸다. 이러한 유기 불안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5는 어린 시절부터 환영받지 못했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환영받지 못한 아이로 의미를 구술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나를 어릴 때 낙태하려고 병원에 갔지만, 낙태 시기를 놓쳐서 낙태하지 못하고 낳았다고 하셨다. 이후 존재를 거부당한 저주받은 아이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식이라고 여겼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엄마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날 내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글썄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원래 원치 않아 낙태하려고 해서. 병원에 가니까. 달수가 너무 차서 낙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낳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뭐라고 말할까. 머리가 핑 돌고 어렸지만, 뒷간에 가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러 태어났을까. 부잣집도 아닌 가난한 집에 왜 태어났을까.[연구참여자5]

연구참여자1과 8은 부모로부터 신체와 정서 학대를 받았다. 이러한 끊임없는 어린 시절 학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는 대물림되어 전 생애에 걸쳐 이어지는 운명론에 빠졌다고 구술하였다. 운명론은 유소년시절부터 형성되었고, 마약을 끊기 전까지 지속 되었다. 연구참여자8은 행복과는 무관한 철저한 불행한 존재이며 행복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구술했다. 책에서도 교과서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이 제일 자주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형도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눈꽃만치도 없었고 진짜 과정을 좀 보태면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처럼 나를 두들겨 뺐어요. 나는 샌드백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 그러니까 언제나 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행복이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기가 싫었어요.[연구참여자1]

위에서 기술한 양육자에 대한 불신, 유기 불안, 신뢰 기반의 붕괴, 피해자 숙명 주의의 경험과 같은 하위 범주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끊임없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외상 경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애착에 대

한 기대감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돌봄 상상력의 박탈이라는 범주로 구성할 수 있다. 돌봄 박탈된 세상은 부모는 자신을 지지하거나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자기 보호를 위한 은폐

애착 손상의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지만, 적극적 노력과 투쟁이 아니라 언제나 회피와 망각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4는 어린 시절 학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를 감추는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구술했다. 또한, 애착 외상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져서 우호적이고 지지해 주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감추고자 했다. 연구참여자6은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사는 것이 생활방식으로 언제나 집단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경험한 욕구 결핍은 욕구와 감정을 차단하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망상으로 도망가는 삶의 전략으로 형성되었다고 구술했다.

저는 지금도 뛰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마약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마약을 하나 그렇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은 강패 같고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개는 샌님이었어요. 그냥 숨어 사는 게 가장 좋았고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 그런 것도 못 했고 그냥 남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았어요.[연구참여자6]

연구참여자5 역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숨어 사는 '히키코모리'라고 구술했다.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자 했기에 직업 역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출발하여 업소를 경영했다. 유흥업소를 선택한 것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보다는 밤에 일하기에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어둠 속에 숨어 살기 좋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참여자9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때로는 유령 같은 존재라고 구술하기도 했다. 음지에서 사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기에 음지에서 마약을 투약했기에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 오랫동안 숨어서 할 수 있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애벌레가 고치에 숨어들어 사는 번데기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삶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다.

내가 마약을 좀 오래 했어요. 마약을 하다가 걸리는 게 왜 걸리느냐.. 마약을 팔기도 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항상 걸려요. 근데 나는 남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고 언제나 혼자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나한테 마약 대주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약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냥 어떨 때는 그림자처럼 살고 어떤 때는 그냥 귀신처럼 유령처럼 사는 거예요.[연구참여자9]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애착 외상으로 인한 상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반

용하기에 알아차리거나 치유하는 방법을 몰랐다. 단지 감정을 억압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원시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7은 애착 외상을 잊고자 끊임없이 기억을 망각하고 이러한 망각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 또한 망각했다고 구술했다. 어느덧 망각에 의한 망각이 스트레스가 되어 지독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되었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착 외상의 기억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에너지는 소진과 정서적 탈진에 마약을 선택했다는 구술하였다.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잊으려고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제가 22살 됐을 때 마약을 처음 시작했는데 마약을 하려고 그랬는지 계속 어릴 때 부모님한테 당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사람인데 머리가 크고 힘이 세졌다고 해서 부모한테 복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욕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망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냥 그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잊어버려요. 나도 사회인이다. 사회인답게 책임 의식을 지니고 살아야겠다. 그런 것 들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연구참여자7]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자신의 욕구와 다른 부모의 욕구에 맞추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 착한 아이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착한 아이 옷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주었다. 연구참여자2는 상처 준 부모에게 굴욕 당하지 않기 위해 울음도 참았으며,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냉수를 바쳐야만 했다. 그는 사악한 아이가 아닌 선한 아이가 되고자 선한 가면을 쓰고자 노력했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3은 본인의 삶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고 구술했다. 부모가 원하는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는 금상첨화이지만, 공부는 못했지만, 예의 바른 아이로 인정받고자 노력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욕구를 억압당했기에 마약을 통해 억눌린 내면의 욕구가 분출하고자 했다는 의미의 구술하였다. 어른들이 원하는 건 그냥 간단해요. 착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면 더 좋죠. 근데 전 공부는 되게 못했어요. 근데 동네에서 인사 하나는 진짜 잘했어요. 어떤 때는 어른들이 멀리 있으면 뛰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어른들은 참 기특하다. 착하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아주 어릴 때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 어른들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왜 해야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착한 아이가 되면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연구참여자3]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고치 속에 숨어 살기, 인위적 망각 훈련, 원하지 않은 착한 아이 되기로 하위 범주로 구성했다. 이러한 하위 범주들은 연구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은폐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3) 반동적 지지의 거부

연구참여자들이 마약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구술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고 공격당했기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공통된 구술은 반동적인 성향이었다. 연구참여자3은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이 짙 차 있었다. 사소한 일에서도 자극에 분노발작과 같은 과격하게 공격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은 법과 규범에 대한 저항으로도 이어졌다. 연구참여자4는 국가와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고 여기며 억울함 때문에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다양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9의 인생 철학은 되로 받은 것은 말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 구술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되로 받았으면 말로 되돌려 주었지만, 말로 받은 사랑은 되로도 되돌려 주지 않고 오히려 적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애착 외상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구술했다.

나이도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때려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컸을 때 힘도 생기고... 아버지는 늙고, 영화 '똥팔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자기와 엄마를 때린 아버지가 병들고 약해지자 아버지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암만 마약을 해도 암만 인간 말종이라도 아버지는 때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힘도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니까 분풀이는 해야하고...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학대당하고 힘들 때 주변에서는 뭐 했냐 이거죠. 보고 배운게 이겁데.. 나 보고 왜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라고 그러냐 다 헛소리... [연구참여자8]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과 저항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7과 1은 주변의 상황을 음모론적 관점인 편집적 사고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진리와 규범적 가치는 모두 날조된 것이며 거짓말이라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본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불공평한 세상으로 비밀과 음모로 짙 찬 세상으로 의미를 구성했다.

이와 같은 음모론적인 시각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정폭력에 침묵하는 이 사회에 대한 반동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네.. 내가 왜 이 사회가 음모냐 그냥 텔레비전에서 뭘 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건... 교수들도 다 짜고치는 고스톱잡아요. 안 그래요? 세상은 가진자

의 음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간단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대신에 매를 맞았지만, 다 침묵했잖아요. 다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하고 세상 사람들은 공모한 공범이죠. 이게 계속 습관이 됐어요.[연구참여자1]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애착 외상은 피해의식과 저항, 음모론적 시각, 친절의 왜곡된 해석으로 하위 범주로 구성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친절한 교사를 가해자로 투사했다. 이는 애착 외상의 가해자인 부모는 권위자로 확장하여 사회 모든 권위자에게 적개심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4) 자기파괴의 대체물 찾기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을 사용하기 전부터 애착 외상에서 벗어나는 대체행동인 자해로 철저히 자기 파괴적 행동에 대한 의미의 내용을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8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거나 공허할 때 자해 충동이 일어나고 자해할 때 느끼는 쾌감을 생각했다. 마약사용 역시 자해의 또 다른 수단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마약 중독이라고 구술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1의 양팔에는 담배와 칼로 인한 자해 자국과 마약으로 인한 중독 흔적인 메스버그(Meth bug) 흉이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약의 쾌감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 금단의 고통을 떠올리고 극단의 금단 고통 속에서 마약의 쾌감을 찾는 악순환의 중독 고리에 갇혔다고 구술하였다.

자해가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살 충동도 물론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보다는 그냥 날카로운 칼만 봐도 짜릿하고... 오늘도 한번 훅 할까?... 아주 어린 시절 고통을 떠올리면 긴장이 되고 약을 하면 떨려요. 자해할 때 아픈 건 단 한순간이에요. 아프면 금방 끝나고 마약도 똑같은 거죠. 끝나고 나면은 몸에서 뭔가가 싹 빠져나가고 진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이 진짜 파도처럼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자해나 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연구참여자8]

연구참여자5와 2, 4는 부모를 모방하여 관계에 갈등이 발생할 때 타인을 공격하였고, 이것이 점차 강화되었다고 구술했다. 특히, 연구참여자5는 키우는 애완동물을 학대했다고 구술했다. 이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공격 행동이 동물들에게 향했고 시간이 갈수록 잔악성은 더욱 커졌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2는 친구들에게 강자로 군림하기 위해 소소한 정서폭력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

체 폭력으로 상해를 입혀 여러 번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연구참여자4는 과거 폭력 예찬론자라는 의미를 구술하였다. 따라서, 폭력은 과거의 상처 입은 자신의 신앙이었으며 믿음의 근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폭력으로 우월감을 확인하고 무기력한 어린 자신을 부모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술은 해장술로 풀고 그런 말처럼 저는 폭력을 할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버지를 대신해 나한테 맞은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어쨌든간에 폭력을 쓰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무섭게 생각하고 참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거지만 당시에는 그게 나한테 진리였어요. 처음, 교도소였을 때 어떤 사람이 종교가 뭐냐 나한테 물었어요. 나는 폭력교라고 얘기했어요. 교도소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경도 보고 성경도 봐요. 그래서 나도 구약에 조금 보니까 맨 전쟁하고 폭력 있잖아요. 싸워서 죽이고...[연구참여자4] 애착 외상의 가해자를 투사해서 실존적 대상에게 가해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 자기 존재를 징벌했다. 연구참여자6은 늘 자신에게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욕을 반복하는 습관이 생성되었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7도 애착 외상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비난을 했다고 구술했다. 이와 같은 애착 외상 경험은 자기 징벌로 나타났다.

나는 툭처럼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때도 욕을 해요. 못해도 욕을 하고 잘해도 욕을 하고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못 된 습관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상담사가 그게 자기를 징벌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문제를 만들고 나한테 죄를 주고 편해졌던 것 같아.[연구참여자6]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징벌과 함께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3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구술했다. 그는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를 키워준 사람들에게도 모두 저주받았다. 그래서 존재 가치가 없는 자신이 마약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여겼다.

부모에게 존재를 부정당했기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를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9 또한 저주받은 인생이 결혼했기에 이혼은 당연하다는 의미를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1의 표현처럼 어린 시절의 외상은 인생의 복병처럼 무의식에 숨어 있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쑥 나타났다. 연구참여자8과 1은 자해의 백과사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자해를 시도했다고 구술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애착 외상의 고통을 잊어야만 했다



태어났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맨날 하고 살아요. 태어났으면 안 된 인간이 빨리 죽었으면 좋는데... 죽지도 못하고 세상에 민폐만 끼친 거죠. 제가 마약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똥개가 똥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똥개로 태어났는데 마약 하는 것 당연하지.[연구참여자1]

위에서 기술한 자해의 쾌감, 가학적 행동, 자기 징벌의 하위 범주들은 연구참여자1이 애착 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파괴적 행동의 대체물이었다. 이는 마약사용에서 중독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주를 자기파괴의 대체물 찾기로 구성하였다.

5) 애착의 재구성

연구참여자1은 애착 상실로 인해 자신을 파괴하는 마약사용을 했다. 그러나 스스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에서 애착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였다. 연구참여자1은 자기 사랑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1은 사람의 행동이나 외면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내면의 정서와 관계 안에서 의도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참여자8도 자신보다는 주변을 살피고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의도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는 인격의 성숙으로 발전했다고 구술하였다.

남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참 어색했어요. 훈련도 안 됐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왜 마약을 하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화풀이하고 막 대하다가...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마약을 하는 내가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하지만 생각만 해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거를 연결시켰어요.[연구참여자5]

연구참여자4는 마약 중독자로 살 때 가족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가족을 비난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구술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장점을 찾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이것은 어린 시절 상처 회복의 길이였다고 구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7은 폭력은 인간을 잔인하게 만든다고 구술했다. 그리고 마약은 긍정적 정서를 없애고 오로지 극한의 불행 속에서 용솨음치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기계로 만든다고 구술했다. 따라서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고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구술하였다.

마약이라는 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 그다음에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뺏어 가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뺏어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빼앗아 갔어요. 처음 약을 할 때는 인간다움도 있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안 됐다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게 중독이 되니까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게 짝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나고 그래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해야겠다고요[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1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약의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제나 마약만을 추구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6도 고립된 어린 시절 상처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에 마약의 세계에 있었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2는 의도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밝은 세계로 나왔다고 했다. 따라서 모든 연구참여자는 고립과 어둠의 세계를 해체하는 것은 애착의 회복이라고 믿고 있었다. 마약은 한마디로 아주 어두운 어둠의 세계... 빛은 하나도 없고... 밝은 태양 안에서는 마약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지하실이나 모텔방 같은 데서 커튼 쳐놓고 그런 곳에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만나기도 싫고 약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해봐요. 용기도 필요하고 의지는 더 필요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거 안 돼요. 밝은 데 나와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면 도와줘요.[연구참여자2]

연구참여자4는 항상 과거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그곳은 어린 시절의 학대와 버림받은 경험만을 끊임없이 재생산했기에 마약이 주는 일시적 해방감에 젖어 있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9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수행했다고 구술했다. 마약 중독에서의 회복은 자신에게 도래하는 많은 사회적 현상이나 일상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9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탈출하여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단약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관용이 마약에 대한 갈망은 물론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마약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답답해요. 저는 마약을 하고 싶은 순간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갈망이 사라지는 것도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약이란 놈이 알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줌 그래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아! 이 놈한테서는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마약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연구참여자1]

위에서 구술한 타인의 세계에 대한 공감적 이해, 소통과 교류의 소양 쌓기의 하위 범주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긍정적 애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결핍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회복하고 이를 사회적 관계에서 재구성하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 이를 애착의 재구성이라는 범주로 구성할 수 있다. 중독에서의 회복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의 자원은 관용이라고 표현했다.

6) 자기 역사의 재창조

연구참여자1의 잘못은 자기 불신과 자기 폄하, 가치 없는 존재 스스로 인식이라고 구술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연민과 관용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자본이라는 의미의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6 또한 삶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삶으로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했다고 구술했다. 하지만 관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미덕으로도 이어졌다.

저는 굉장히 뻣뻣했어요. 나한테도 뻣뻣했지만, 남한테는 더 했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봤어요. 내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다들 부들 부들 떨죠. 봐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봐주기 시작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요. 어릴 때 힘들게 살고 또 커서도 힘들고... 엄마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뻣뻣하게 한 거예요.

뻣뻣하게 당한 사람이 또 뻣뻣하게 남들한테 하죠... 마약을 끊기 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마약 하는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마약인데... 끊고 나니까 겁이 덜컹 나요. 사람들에게 당할까... 바뀌야 겠더라고요. [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5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포기하고 자신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구술하였다. 그래서 타인에게도 수용되지 못하고 비난을 당했다고는 의미 구성을 했다. 그는 자기수용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마약 중독에 회복되었다. 이는 어린 시절 상처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8은 자기 파괴적 행동을 끊임없이 교정하고자 했다. 그는 다혈질적 성격으로 별명이 '휘발유'였다.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파괴적 행동을 바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애착 외상에서의 회복은 외상을 오히려 타인의 감정이해와 연민으로 승화할 수 있음을 믿고 일상에서 봉사를 실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월의 망상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과 관계에서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찾고 만족하는 것이 애착 회복의 길이라고 의미의 구성을 하였다.

저는 언제나 큰 것만 찾았어요. 한 방 그거죠. 열등감 그런 걸 다 극복하려고 했던거고... 근데 그런 걸 찾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손에 쥘 모래 같은 거더라고요 움켜쥘려고 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나도 모르게 싹 다 빠져나가요. 약을 딱 끊고 나서는 의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건 누가 안 찾아주거든... 내 문제가 뭐냐 너무 거창 것만 찾았다는 것... 그러다가 대박만 좇다가 쪽박 찬 인생이니까 이제는 그냥 하루 하루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산에 가는 거 산책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에 새롭게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들은 중독자가 아닌 회복자로서 삶의 방식을 구성할 방법을 어린 시절 학대한 부모와 애착을 회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2는 애착 외상 회복은 동료의 상처치유를 돕는 치유의 자원으로 삼고자 노력했다. 학대는 불로 데인 낙인 같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시 생성된 가족에 대한 사랑은 상처를 승화시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7은 마약 중독자에서 회복자로 더 나아가 한 보통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의미의 구성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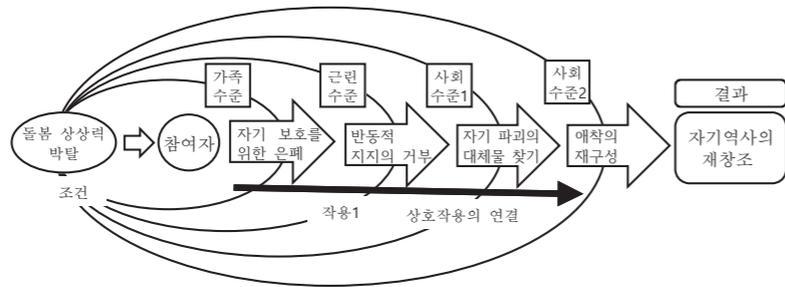
내가 생각을 먹어도 내일 세상이 변할 수도 있죠. 아니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

하는 거죠. 그런데 마약이라는 게 그래요. 아마 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박도 그렇고 오늘 하루 건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끊으면 내일 끊고 모래 끊고 그래서 이게 축적 되는 건데...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도 나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뭐... 사람을 믿고 살자. 내일 배반 당해도 오늘은 믿고 살고 오늘은 마약을 끊자.[연구참여자3] 위에서 기술한 관용, 자기의 돌봄, 새로운 삶의 방식 구성이라는 하위 범주들은 연구참여자 3들이 마약을 끊고 자기의 삶을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경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자기 역사의 재창조라는 범주로 구성했다.

2. 조건·상호작용 결과 매트릭스

조건·상호작용, 결과 매트릭스는 Corbin와 Strauss(2014)가 기존의 축 코딩을 삭제하고 새롭게 제안한 모델이다.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은 행위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Corbin와 Strauss(2014)는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각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매트릭스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매트릭스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건-작용/상호작용-결과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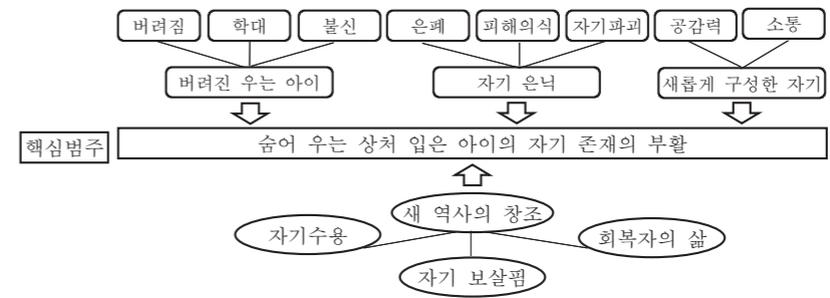
본 연구의 조건은 돌봄 상상력 박탈로 나타났다. 돌봄 상상력의 박탈은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수준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은폐라는 구체적 전략으로 나타났고, 근린 수준에서는 자기 관심과 우호적 지지를 거부하는 반동적인 지지의 거부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 수준1에서는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대체물 찾기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이는 마약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사회 수준2에서 애착을 재구성했다. 이러한 애착의 재구성은 과거 애착 외상 경험을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 수용으로 가족의 이해와 함께 중독에서 회복되어 회복자로서 삶을 영

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애착을 재구성해야만 한다는 각성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작용/상호작용은 사회 수준까지는 부정적이었으나, 애착의 재구성을 통해 자기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3. 핵심범주

핵심범주는 연구참여자들의 모든 경험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인 동시에 광범위해야만 한다(Corbin & Strauss, 2014). 그래서 핵심범주는 기술적 요약 메모 작성, 개념적 요약 메모 구성과 같은 메모를 이용한 검토와 분류, 통합적 도포의 사용, 은유와 직유의 활용, 교수 혹은 동료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Corbin & Strauss, 2014). 연구자는 개방 코딩에서 구성한 6개의 범주를 기술적으로 요약 메모를 했다. 이러한 것들을 메타포(metaphor)를 활용하여 핵심범주를 구성했다. 연구참여자들의 모든 경험을 압축한 것으로서 구절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문장으로 표기하였다. 핵심범주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은유와 기술적 요 메모를 활용한 핵심범주 구성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는 숨어 우는 상처 입은 아이의 메타포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드러냈고, 자기 존재의 부활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또는 성장 과정에서 애착 외상을 경험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유기 불안을 함께 수반하였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처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애착 외상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관계에서 피해의식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를 은폐하고자 했으며, 자기를 파괴함으로써 가학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마약은 애착 외상의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는 은닉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사용에서 중독까지의 역사를 반성하며 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관계에서 소통을 통해 새롭게 건강한 자기를 구성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마약류 중독자로서 실존적 삶을 수용하고자 하고 내면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받은 우는 어린아이를 스스로 보살피고자 했다. 과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성인인 자신이 상처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보살핌으로써 내면의 경이로운 아이를 발견하고 이를 성장시켰다. 이러한 자기 돌봄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처 받은 내면 아이의 돌봄과정을 거쳐 회복자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애착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자기 존재를 부활시킬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애착 형성 초기에 부모 또는 주요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 경험이 마약사용과 마약 중독에 이르는 과정과 애착 외상의 회복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된 회복자 중 어린 시절 애착 외상 경험이 있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없어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주요 범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마약류를 사용하고 중독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독에서 회복 또한, 성인기에 애착 회복으로 인한 애착의 재구성을 통해 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제시

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마약류 사용은 애착 외상의 고통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은폐 전략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비롯한 주 양육자로부터 필수요건인 돌봄과 사랑과 같은 긍정적 양육을 받아야 했으나,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박탈되었기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에 중독되는 보호의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Skowron과 Dendy(2004:337-357)은 애착 외상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고립을 유도해 심리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는 오히려 심리적 안정보다는 불안과 우울 증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행동이 중독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마약류의 사용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개인들이 애착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에 대처하고 정서적 고통을 덜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Ossola, 2021:560-580, Schindler, 2019:737).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애착 외상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치유보다는 마약류로 자기를 자신 속에 은폐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 시절 애착 외상은 내면의 수치심과 고립감을 경험하기에 이로 인해 자기 멸시, 자기 비난, 자기의 손상과 같은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손상은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고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Allen, 2013; Cook & Spinazzola, 2005:392). 따라서,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은 사회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가족과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애착 재형성과 함께 유대감을 회복하고 특히, 가족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한다.

중독자의 어린 시절의 애착 외상은 성인기의 긍정적인 애착 경험을 한다면 중독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강선경, 2018:120). 그래서 교정시설에서는 재범예방을 위해 대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애착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애착 형성에 실패한 개인들의 연구이지만, 많은 마약 중독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기와 학대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는 분노로 반사회적인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유숙경, 2020:150).

애착은 전 생애 걸쳐 인생의 과정에 유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기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안정 애착은 경험은 긍정적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계속되어 성인이 된 이후 긍정적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어 대인관계 형성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McCormick & Kennedy, 1994:1-18). 그래서 애착의 재형성은 자기 존재의 새로운 인식



의 변화와 관계회복, 주변 사람의 지지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Alexandre, 2007:243-256).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시설에서는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한 긍정적 애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 마련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지지의 거부 현상에 대한 논의이다.

건강한 애착은 친밀한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주는 한 명 혹은 다수의 사람과 접촉을 유지하려는 안정적인 경향성이다(Berman, Heiss & Sperling, 1994:171-182).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지를 거부하고 반동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반동적 정서와 전략은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대체물을 찾는 방향으로 경도되어 마약의 중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착 외상 경험은 세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지향을 왜곡시켜 무력감, 낙인,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심리적 손상으로 부정적 문제행동, 극단적 자기파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중독이다(Alessi et al., 2011). 그리고 애착 이론의 측면에서 중독은 긍정적인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고통스러운 욕구의 보상이며, 약물의존은 사회적 애착 관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자연적 보상을 대치하려는 시도로 본다(Ryan, Brow & Creswell, 2007:177-182). 이처럼 마약류 사용과 중독과 애착과의 관계는 애착의 결핍은 정

서 지능의 저하로 이어진다.

마약류 중독자들의 애착 외상 경험은 정서 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말초적이고 극단적인 약물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든다(Dewi 2022:1-11, Subocz, 2022:54-61). 애착 외상으로 손상된 정서 지능은 사람들과의 애착을 재형성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존적 삶을 수용하고 현재의 중독자로서 자기 인식과 실존 체험을 통해 중독에서 회복으로 이어졌다(Jalali et al., 2019:1-9). 또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약물 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약물 없는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활용함으로써 가족과 동료의 지지로 애착을 재구성하여 마약에서 탈출하는 원동력으로 발전시켰다(Kaskutas et al., 2014:1000-1001). 따라서,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족 관계회복 기술 훈련과 사회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애착 증진 프로그램은 동물을 매개 프로그램과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관용과 자기 돌봄에 대한 논의이다. 성장기에 애착 외상을 경험한 경우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지니기 쉽다.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은 분노 감정을 유발하지만, 분노를 표출할 수 없거나 어른이나 권위자에게 저항하는 힘을 갖지 못해 분노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전경수 2004; Allen, 2013).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애착 외상을 경험했지만, 자기에 대한 관용을 가지고 집중함으로써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합리적 신념과 함께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애착 외상을 경험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갖게 되고 이는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유숙경과 이경원(2020:31-68)은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예방 프로그램 연구에서 마약 중독자들은 내면의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지니고 있고, 이는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면의 경이로운 아이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본 연구 역시 자기 돌봄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관계의 회복되고 이는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돕는 지지기반을 강화하였다(Chasek et al., 2017:1-16; Mauro et al., 2017:324-331).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관용과 돌봄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실존적 힘을 배양할 수 있었다(Jalali et al., 2019:1-9).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 경험과 마약류 중독을 이해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좀 더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어린 시절 애착 외상을 경험한 남성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애착 손상으로 인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실천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교정 차원에서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애착 회복을 위한 내면 아이 치유 프로그램과 IFS(Internal Family Systems) 프로그램 필요성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 중독자의 애착 외상 경험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의 경험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 경험이 마약류 중독과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는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 경험을 자기 보고식으로 점수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애착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남성 마약 중독자의 사례를 구분하여 비교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애착 외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중독을 경험하고 회복한 마약류 중독자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맥락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애착 외상 경험과 마약류 중독과 회복과정에서 애착 재구성 경험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실체이론화한 것으로서, 마약류 중독의 원인을 지엽적인 맥락을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회복 경험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강선경, (2018), ‘약물 중독자의 회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 연구 제12권 제1호, pp.191-211,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 김기태/정중화, (2019), ‘노인의 죽음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32호, pp.115-148,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 김민선/박인실, (2020),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술치유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신체활동을 수반한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pp.127-149.
4. 김수희/정중화/김원곤/송진영, (2019), ‘독거노인의 죽음 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33호, pp.153-180,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5. 김옥희/이경자/한연현, (2017), ‘애착외상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부정적응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pp.95-114,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회.
6. 김진희, (1998),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부모개입 프로그램: 지도자지침서’, [KYCI] 교육 및 프로그램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육연수원.
7. 김해진/신현균/홍창희, (2008),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27권 제3호, pp.729-748, 한국심리학회.
8.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 백서’, 서울: 대검찰청.
9.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삶의질연구, 제18권 제1호, pp.127-137, 가정과 삶의질학회.
10. 백형의/한인영, (2014),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경험: 세상에서의 되살이 경험’,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42권 제3호, pp.151-177,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11. 오순옥/이정숙, (2018), ‘자기회귀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청소년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간의 종단적 관계검증’,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제13권 제2호, pp.33-50,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12. 우재희, (2014), ‘남·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98-307, 한국콘텐츠학회.
13. 유숙경,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사용 경험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유숙경/이경원,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 회복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矯正研究, 제30권 제2호, pp.31-68, 한국교정학회.
15. 윤명숙/박아란, (2019), ‘청소년기 애착외상경험이 성인기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제20권 제2호, pp.1-13,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16. 윤명숙/이재경, (2014), ‘비행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음주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1호, pp.155-180,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7. 윤현준, (2013), ‘약물 의존자 회복 체험 연구 인간 되어감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이동성/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 1-26.
19. 이순희/김신정, (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 제3호, pp.453-464, 한국보건간호학회.
20. 이유허,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전경수, (2004), ‘마약류 투약범죄에 대한 대체의료교정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22. 전영실/김슬기/배상균/주현경, (2017), ‘신종마약류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지영환, (2005),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호, pp.297-335, 한국범죄심리학회.
24. 진미령/신성만, (2016), ‘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도피이론(Escape Theory)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제1권 제1호, pp.31-53, 한국심리학회.
25. 최가연/송연주, (2019),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4권 제4호, pp.853-870, 한국심리학회.

26. 현안나, (2012), '청소년 음주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Jessor의 문제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305-333,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외국 문헌]

1. Alessi, H., Ahn, B., Kulkin, H., & Ballard, M. (2011). 'An exploratory study: Lesbian identity development and attachment style', Retrieved on August, 12, 2011.
2. Alexandre, B. L. (2007). 'What does recovery mean to you Lessons from the recovery experience for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33(3), pp.243-256
3. Allen, C. (2012). 'Trans-Indigenous: Methodologies for global Native literary studies.
4. Allen, J. G. (2013).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London: Karnac Books Ltd.
5. Bernstein, D. P., Fink, L., Handelsman, L., & Foote, J.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6. Berman, W. H., Heiss, G. E., & Sperling, M. B. (1994). 'Measuring continued attachment to parents: The continued attachment scale—Parent version', *Psychological Reports*, 75(1), pp.171-182.
7. Bowlby, J. (1969). 'Disruption of affectional bonds and its effects on behavior', *Canada's mental health supplement*.
8. Boys, A., Marsden, J., & Strang, J. (2001). 'Understanding reasons for drug use amongst young people: a functional perspective', *Health education research*, 16(4), pp.457-469.
9. Bryant, F. B., & Veroff, J. (2017). 'Savoring: A new model of positive experience', Psychology Press.
10. Cihan, A., Winstead, D. A., Laulis, J., & Feit, M. D. (2014). 'Attachment theory and substance abuse: Etiological link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4(5), pp.531-537.
11. Chasek, C. L., Tillman, D. R., Hof, D. D., Dinsmore, J. A., & Maxson, T. Z. (2017). 'A qualitative analysis of counseling students' thought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ddiction counseling and treatment', *VISTAS Online*, 37, pp.1-16.
12. Cook, A., & Spinazzola, J.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5), pp.390-398.
13. Corbin, J. (2004). 'Grounded Theory: Qualitative Analysis', Seoul: Korea Center for Qualitative Methodology
14. Corbin, J., &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15. Courtois, C. A., & Ford, J. D. (Eds.). (2009). 'Treating complex traumatic stress disorders: An evidence-based guide (p. 82)', New York: Guilford Press.
16. Csabonyi, M., & Phillips, L. J. (2020). 'Meaning in lif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60(1), pp.3-19.
17. Dewi, Z. L. (2022). 'Attachment Styl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Individuals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Jurnal Psikologi*, 21(1), pp.1-11.
18. Dixon, L. J., Leen-Feldner, E. W., Ham, L. S., Feldner, M. T., & Lewis, S. F. (2009). 'Alcohol use motives among traumatic event-exposed, treatment-seeking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posttraumatic stress', *Addictive behaviors*, 34(12), pp.1065-1068.
19. Fergusson, D. M., Boden, J. M., & Horwood, L. J. (2008). 'Exposure to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adjustment in early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32(6), pp.607-619.
20. Font, M. G. C., Poch, F. V., López, J. R. J., Perpiñá, M. M., & Cerrato, S. M. (2018). 'Temperament and attachment as predictive factors for the risk of addiction to substances in adolescents', *Revista de psicopatología y psicología clínica*, 23(3), pp.179-187.
21. Guba E. G. & Y. S. Lincoln.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2. Jalali, R., Moradi, A., Dehghan, F., Merzai, S., & Alikhani, M. (2019). 'The exploration of factors related to treatment retention in Narcotics Anonymous members: a qualitative study', *Substance Abuse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14(1), pp.1-9.

23. Kaskutas, L. A., Borkman, T. J., Laudet, A., Ritter, L. A., Witbrodt, J., Subbaraman, M. S. & Bond, J. (2014). 'Elements that define recovery: the experiential perspectiv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75(6), pp.999-1010.
24. Katsogianni, I. V., & Kleftras, G. (2015). 'Spirituality, meaning in life,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drug ad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ety*, 5(2), pp.11-24.
25. LaBelle, O. P., & Edelstein, R. S. (2018). 'Gratitude, insecure attachment, and positive outcomes among 12-step recovery program participants', *Addiction Research & Theory*, 26(2), pp.123-132.
26. Laudet, A., Morgen, K., & White, W. (2006). 'The role of social supports, spirituality,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affiliation with 12 step fellowships in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among individuals in recovery from alcohol and drug problems', *Alcohol Treatment*, 24(1-2), pp.33-73.
27. Lincoln, Y. S., Lynham, S. A., & Guba, E. G. (2011).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revisited',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2), pp.97-128.
28. Lovimi, S., Nazarzadeh, F., Moini, F., Aminyazdi, A., & Rostaee, M. (2018). 'The relation of attachment styles and problem solving skills to resiliency in treatment-seeking substance dependents', *Journal of Research and Health*, 8(3), pp.210-217.
29. Mathison,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2), pp.13-17.
30. Mauro, P. M., McCart, M. R., Sheidow, A. J., Naeger, S. E., & etourneau, E. J. (2017). 'Parent and youth engagement in court-mandated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26(4), pp.324-331.
31.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pp.1-18.
32. Nicholson, T., Higgins, W., Turner, P., James, S., Stickle, F., & Pruitt, T. (1994).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the occurrence of drug abuse: A retrospective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8(1), pp.24-28.
33. Oshri, A., Tubman, J. G., & Burnette, M. L. (2012). 'Childhood maltreatment histories, alcohol and other drug use symptoms, and sexual risk behavior in a treatment sample of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S2), pp.50-57.
34. Ossola, P. (2021). 'Early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substance use disorder: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a biopsychosocial entanglement',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31, pp.560-580.
35. Padgett, D. K. (2016).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36. Rumpf, J., Bischof, G., & Hapke, U. (2002). 'The role of family and partnership in recovery from alcohol dependence: comparison of individuals remitting without formal help and with and without formal help', *European Addiction Research*, 8(3), pp.122-127.
37. Ryan, R. M., Brown, K. W., & Creswell, J. D. (2007). 'How integrative is attachment theory? Unpacking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felt security', *Psychological Inquiry*, 18(3), pp.177-182.
38. Schindler, A. (2019). 'Attachment and substance use disorders—theoretical models,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Frontiers in psychiatry*, 10, pp.727.
39. Skowron, E. A., & Dendy, A. K.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ttachment in adulthood: Relational correlates of effortful control',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6, pp.337-357.
40. Strathearn, L., Mertens, C. E., Mayes, L., Rutherford, H., Rajhans, P., Xu, G., ... & Kim, S. (2019). 'Pathways relating the neurobiology of attachment to drug addiction', *Frontiers in psychiatry*, pp.737.
41. Strauss, A., & Corbin, J. (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42.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43. Strine, T. W., Dube, S. R., Edwards, V. J., Prehn, A. W., Rasmussen, S., Wagenfeld, M., ... & Croft, J. B. (2012). 'Association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sychological distress, and adult alcoho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6(3), pp.408-423.
44. Subocz, D. (2022). 'The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the pathogenesis of dissociative symptoms—literature review', *Archives of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2, pp.54-61.

교도관으로, 그리고 상담자로 살아내기



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치료센터 교감

‘어떻게 하면 교도관과 상담자 두 가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그럴 때면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생각이 많아진다. 아침에는 수용자 거실에서 거실검사를 하고 오후에는 그 수용자와 심리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주는 부담감을 알기에 말로는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교도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정이라는 조직에 속해있는 상담자이기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상반된 역할을 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고민스럽고 어렵기만 하다.

교회적으로 채용되어 수용자 교육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이십여 년이 되고 심리치료 업무를 하며 집단상담 진행자로 살아온 시간이 십여 년이 되었다. 긴 시간을 지나며 알게 된 경험의 틀로 교정(矯正)을 보는 것에 익숙한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여전히 부족한 교도관이지만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작게나마 시사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례를 나누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심화교육생 집단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던 한 구성원(이하, 도라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집단 초기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라서 신뢰감을 쌓기 위해 별칭,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 등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변화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자신의 변화단계는 어디에 속해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상태이고 싶은지를 다루고 있었다. 다른 구성원이 도라지 소개가 끝나고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질문하자 도라지는 뚱한 표정으로 직업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내며 복도로 뛰어나갔다.

당시에는 집단상담 경험도 적었고 이런 수용자를 만난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얼른 잡아야 한다는 마음만 앞섰다. 다행히 도라지는 복도 끝에서 화장실 쪽으로 몸을 틀었고 나는 험레벌떡 뛰어가 창문 앞에 서 있는 도라지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집단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이유를 묻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변변찮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농사밖에 없었는데 다른 직업은 없었냐는 질문이 자신을 형편없는 놈이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다면서 자신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잘못을 구하였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 집단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도라지는 다른 구성원의 말투가 맘에 안 들어서, 피드백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진행자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복도를 여러 번 뛰어나갔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던 어느날,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교정시설의 안위를 책임지는 CRPT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RPT가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가려던 도라지를 즉시 체포하여 도라지는 조

사실에 격리되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뼈저린 반성문과 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도라지는 훈계 처리되었고 이후 개인상담을 통해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처리방식에 대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방법을 훈련하였으며 이후 프로그램 중 갑자기 교육실을 뛰쳐나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례 속의 '좋은 상담자'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무엇이였을까? 정신분석의 말로 Acting out을 풀이해보면 '스스로 인식하거나 인식한 상태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갈등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랬다. 나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구성원을 잘 설득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잘 해내는 상담자이고 싶었다. 그러다보니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서 해보려고만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도움자가 있었고,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실패한 상담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교도관으로서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도관인 상담자'로 살아내려면 구성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상담자로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구조화하고 목적과 기법 등 내담자에게 맞는 적합한 상담도 해야 하는 것이다. 도라지의 사례는 이것을 알게 해준 고마운 사례였다.

두 번째 사례는 상담 장면에서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같은 거실에 있는 수용자 때문에 도저히 혼거할 수 없으니 독거하도록 요청하는 구성원(이하, 탱크)에 대한 이야기이다. 탱크는 사전면담을 할 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를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구성원이었고 다른 구성원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초지일관 주장하면서 다른 구성원에게 골치아픈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심화교육 프로그램은 두 명의 진행자가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불안정한 애착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 범죄로 이어진 구성원들에게 모델링이 되기도 하고 전이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진행한다. 나의 짝꿍 선생님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집단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선생님과 나는 탱크의 불만과 자신의 영웅담이 섞인 과거의 이야기를 2시간 이상 들어줄 때도 있을 만큼 애를 썼는데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불평으로 진행자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지장을 주었을 때 발생한 일이다.

상담시간을 50분으로 정해두었음에도 탱크는 50분이 넘도록 혼거에 대한 불편감을 쉽없이 쏟아내었고 진행자가 집단을 하고 난 뒤라 지친 상태이기에 다음 상담에 다룰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을 마무리하려 하였다. 그런데 동료 선생님께서 탱크와 따로 이야기를 더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선생님의 따끔한 훈육이 시작되었다. 동료 선생님은 다양한 수용자를 다룬 경험을 갖고 있는 상담자였고, 내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수용자로서 거실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수정해야 할 이유에 대해 탱크의 태도를 예로 들어 자세히 지도하였다. 그리고 타 구성원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하고 있는 진행자의 심정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는커녕 당연한 듯 행동했던 탱크는 강력하지만 세밀한 지도에 입을 닫게 되었고, 그 날 이후 탱크는 진행자인 나에게 깽뚫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라며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각 단계 마다 해결해야 할 위기와 갈등이 있으며 그 단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경험들을 기본적인 덕목(Virtue)으로 불렀다. 이러한 덕목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에 매 순간 위기를 잘 넘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탱크의 경우 학령전기인 3단계에 머물러 있어 자신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고 목적성이라는 덕목을 얻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탱크에게 '수용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교도관의 입장에서 지지적으로 설명하였고, 왜곡되고 이기적으로 얼룩진 사고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탱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교도관과 상담자의 역할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교도관의 입장에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또 때로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성폭력사범 프로그램 '책임있는 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7가지 중에 '경계(經界)'라는 것이 있다. 진행자로서 이 경계를 설명할 때 '국경'을 예로 들곤 한다. 유럽에 가보면 맞닿아있는 국가들간 국경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코로나팬데믹이 발생하자 국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경계를 살벌히 함으로써 국경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였다. 국경은 그 역할이 있기에 분명 존재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우리는 국경의 경비를 강하게도, 혹은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도관과 상담자 사이에도 그러한 역할 경계가 있다. 필요에 따라 교도관으로서 위기상황에는 경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되,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안정된 심리 상태를 끌어내야 할 때는 경계를 완화하여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나들목처럼 말이다.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기각 판례 연구

-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과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및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을 중심으로



김자영
서울지방법정청 교감, 변호사

목차

- I. 들어가며
- II. 과밀수용 청구기각 판례
- III. 각 판결문의 주요 내용
- IV. 맺음말

참고문헌

I. 들어가며

2017다266771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는 이후 다행스럽게도 원고들이 과밀수용 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또한 다수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69405 판결은 1심에서 원고가 500만원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3심인 대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과밀수용에 대한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2심에서 원고가 청구 인용을 받은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국가 승소 판결이 여럿 선고되고 있어서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 글에서는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에 대하여 과밀수용 국가배상 책임이 일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을 중심으로 어떠한 항변으로 피고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주요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과밀수용 청구기각 판례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에 대하여 과밀수용 국가배상 책임이 일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의 배상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용기간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원고	김○○	백○○	고○○
과밀 수용 주장 기간	539일	2년7개월	1,825일(5년)
청구 금액	539만 원	2,000만 원	1,825만 원
1심 과밀 수용 인정 기간	539일	4개월	113일
1심 인용 금액	50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2심 과밀 수용 인정 기간	0일	0일	0일
2심 인용 금액	0원	0원	0원
원고상고여부	상고	상고포기	상고포기
대법원 결과	상고기각	-	-

III. 각 판결문의 주요 내용

1.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

(1) 사건 개요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1인당 최소 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구금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9. 20.부터 2017. 3. 13.까지 539일 동안 성인 남성인 원고를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에 훨씬 미달하는 공간에 과밀수용하여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390,000원(= 1일당 1만 원 × 539일)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 경과

- 2019. 7. A구치소 출소자 김○○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22. 6.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32442 판결 (원고 위자료 500만원 인용, 소송비용 피고 대한민국 부담)
- 2023. 6.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판결 (피고 항소 인용, 원고 패,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 2023. 10. 대법원 2023다269405 판결 (상고 기각, 상고 비용 원고 부담, 원고 패 판결 확정)

(2) 1심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32442 판결문 주요 내용

A구치소 출소자인 김○○은 소송과정에서 539일간의 과밀수용으로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가까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수용자에게도 자신만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은 수용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아니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정신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예외적 사유 중의 하나로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앞서 본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출소한 이후이긴 하지만, 2019. 4. 23. 개정된 법률에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 금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기본계획에 반드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을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절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뒤늦게나마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정적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타당하지 않고 피고의 의지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의 주장 중 특히 재정문제에 관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2004년과 2005년에 세계 10위에 올랐고, 2017년에 11위, 2018년에 10위, 2019년에 12위, 2020년과 2021년에 다시 10위에 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강제력 있는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개선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고 스스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나아가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피고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자의 혼거 수용 문제 및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정당화 할 수 없다.

4. 원고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고 가게 된다. 그 때문에 원고는 종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및 인간적 고통과 앞서 본 피고의 경제력, 개인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 전주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소32442 판결 -

(3) 2심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피고의 항변과 판결문 주요 내용

가. 2심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다.

주장 1) 원고에게 과밀 수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과밀수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수용기간 전체를 과밀수용 기간으로 파악하여 국가배상 위자료 금액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주장 2) 원고가 징벌 등으로 1인실에 있었던 기간, 노역수로서 기결노역실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명백하게 1인당 면적 2㎡ 이상이 확보되었으므로, 이 기간들은 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수용기간	수용거실	비고	화장실제외 수용면적(m ²)	수용 인원(명)	1인당 면적(m ²)	2m ² 이상 기간
2018. 1. 23. - 2018. 2. 22.	005-01-25	영상조사징벌	5.7	1	5.7	1일
2018. 1. 23. - 2018. 2. 22.	005-01-01	기결노역	19.65	4	4.91	6일
2018. 1. 23. - 2018. 2. 22.	005-01-15	영상조사징벌	5.7	2	2.85	8일
2018. 1. 23. - 2018. 2. 22.	005-01-16	영상조사징	5.7	2	2.85	13일
2018. 1. 23. - 2018. 2. 22.	012-01-13	감염병예방 격리수용거실	5.7	2	2.85	3일
합계						31일

주장 3) 원고의 경우 관련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A구치소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밀 수용되지 않도록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의 사실이 있어, 검찰청에서 원고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던 특수한 사정¹⁾이 존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위법성조각사유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A구치소의 일시적인 수용 사정 악화에 따라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과밀수용을 회피할 수 없었던 특수 사정이 위법성조각사유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A지방법검찰청 형사 1부의 원고 이송 보류 요청

이송 보류 사유	작성일	기간	비고
수용자 이송 보류 요청	2017. 11. 1.	2017. 11. 1. - 2017. 11. 24.	징역 1년 형집행기간 2017. 9. 20. - 2018. 9. 16.
수용자 이송 보류 요청	2017. 11. 22.	2017. 11. 25. - 2017. 12. 22.	
수용자 이송 보류 요청	2017. 12. 26.	2017. 12. 23. - 2018. 1. 22.	
수용자 이송 보류 요청	2018. 1. 25.	2018. 1. 23. - 2018. 2. 22.	

주장 4) 원고와 유사하게 500여 일 기간 과밀수용 주장을 하였던 국가배상 사례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수용자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일당 위자료 약 1,901원 정도로 감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용거실 리모델링, 보일러, 스프링쿨러 공사 기간 등의 사정이 과밀수용배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수용기관	원고주장 과밀기간	2m ² 이상 기간	인정위자료	1일당 위자료
수용자 P	A구치소	526일	-	100만 원	1,901원
이 사건 원고	A구치소	523일	31일	500만 원	10,162원

주장 5) 최근 광역버스에서는 입석금지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서 탑승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등의 경우에는 과밀 탑승으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에게 다음 버스를 타거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과 같은 다양한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그 탑승인원을 제한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구속 재판의 필요성, 사회 질서 유지와 같은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므로 교정시설이 과밀이라고 하여서 구속인원이나 수용인원을 달리 제한할 수 없으며, 형사정책에 따라 구속인원이 급증하는 경우와 같은 시기에는 가석방을 통한 수용인원의 조절 방법 또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예외적으로 소장은 일정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교정시설 입소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한 실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 2심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판결문 주요 내용

다행히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국가배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수용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나. 구체적 판단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A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2.부터 2019. 3. 18.까지 총 523일 간 A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실, 2018. 1. 경 및 2019. 1. 경을 기준으로 A구치소의 수용정원은 1,470명이었으며, 당시 수용인원은 위 정원을 초과한 1,736명 내지 1,811명이었던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1. 12. A구치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가 2017. 7. 경 8명이 정원인 대형거실(21.19m²)에서 15명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A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독거방에 수용되어 있었던 며칠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형거실(21.19m²)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수용기간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m² 미만이

수용되었던 사실, 2018. 1. 경 및 2019. 1. 경을 기준으로 A구치소의 수용정원은 1,470명이었으며, 당시 수용인원은 위 정원을 초과한 1,736명 내지 1,811명이었던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1. 12. A구치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가 2017. 7. 경 8명이 정원인 대형거실(21.19㎡)에서 15명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A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독거방에 수용되어 있었던 며칠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형거실(21.19㎡)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수용기간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될 정도의 인원과 함께 원고를 거실에 수용함으로써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전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나6143 판결 -

(4) 3심 대법원 2023다269405 판결문 주요 내용

원고는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10.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69405 판결 -

2.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1) 사건 개요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B교도소에서 1인당 2㎡에 미달하는 거실에 과밀수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 경과

- 2020. 7. B교도소 수용자 백○○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22. 10.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1645 판결
(원고 위자료 120만원 인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
- 2023. 8. 춘천지방법원 2022나6143 판결
(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인용, 원고 패,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 2023. 9. 원고 상고하지 않음, 원고 패 판결 확정

(2) 1심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1645 판결문 주요 내용

B교도소 수용자 백○○ 소송과정에서 2017년 12월 입소 후 약 2년 7개월 동안 과밀수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기간을 B교도소 의료거실에서 지냈던 특수 사정이 있었다. 변론 과정에서 원주교도소의 '치료거실'의 실측면적은 15.12㎡인데, 약 4개월의 기간에는 8명이 수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 밖에 B교도소에서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협소한 공간을 제공함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예를 들어 B교도소에서 채광, 통풍, 냉난방 시설, 기타 위생시설을 특별히 설치하였다거나 또는 수용자가 치료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제공하였다는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과밀수용 관련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B교도소에서 1인당 2㎡에 미달하는 거실에 과밀수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집행법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는 보통 가로 100cm, 세로 200cm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수용자 1인당 2㎡의 공간 확보 여부를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2014다5097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B교도소에서 수용된 치료거실의 실측면적은 15.12㎡인데, 여기에 8명이 수용될 경우 1인당 공간은 1.89㎡이고, 7명이 수용될 경우 1인당 공간은 2.16㎡이고, 6명이 수용될 경우 1인당 공간은 2.52㎡가 된다. 원고가 B교도소에 수용된 대부분의 기간에는 ‘치료거실’에 7명 이하가 수용되었으나, 약 4개월의 기간에는 8명이 수용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 밖에 B교도소에서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협소한 공간을 제공함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예를 들어 B교도소에서 채광, 통풍, 냉난방 시설, 기타 위생시설을 특별히 설치하였다거나 또는 수용자가 치료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제공하였다는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B교도소에서 약 4개월 기간 동안 1인당 공간이 1.89㎡에 불과한 상태로 과밀수용되었고, 이는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된 유사사례에서 확정된 위자료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만 원으로 정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21. 3. 9. 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3.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분쟁의 경위와 승패비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춘천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0가단1645 판결 -

(3) 2심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 피고의 항변과 판결문 주요 내용

가. 2심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주장 1)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및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수용자 1인당 2.58㎡를 확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 50975 판결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문제된 수용자 1인당 개인사용 가능면적 1.59㎡, 1.06㎡, 1.27㎡ 중에서 1.06㎡, 1.27㎡ 수용거실의 수용이 위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1인당 개인사용가능면적 1.59㎡는 과밀수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아닙니다(헌법 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주장 2) 원고는 B교도소 수용 중 대부분의 기간을 2㎡ 이상 1인당 거실면적을 제공받았으며, 실측면적이 아닌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2㎡ 이하의 1인당 거실 면적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주장 3) 더군다나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1일 30분간 운동과 진료, 일반접견, 변호인접견, 수사접견, 검찰소환 및 법원 출정, 종교집회, 작업장 출력 등 다양한 이유로 거실 밖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장 4) 그리고 피고는 수용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용동에 2대의 선풍기를 가동하여 냉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용동 수용거실 밖에 위치한 수용동 도우미실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시원한 냉수를 지속적으로 수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고온 시 1일 1회 얼음 생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열대야 지속 시 1일 2회 얼음생수를 지급하여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하절기에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각 수용동에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장 5) 원고가 수용되었던 3동하층은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으며, 수용거실에 방음 및 방열이 뛰어난 샷시를 설치하였고,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거실 앞 복도 위에 설치된 환풍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일부 과밀이 되었다더라도 위 사항과 같이 피고는 원고가 안정적인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치료거실에 수용하여 적절한 수용관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입증방법 예시

- 을 제29호증 2022년 동절기 수용자 운동 및 온수 목록 계획
- 을 제30호증 2022년 동절기 난방계획(안)
- 을 제31호증 2022년 선풍기 사용 계획
- 을 제32호증 2022년도 하절기 자체 수요관리 계획(안)
- 을 제33호증 수용동 냉장고 관리 계획

주장 6) 원고는 교정시설에서 적어도 1.58㎡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1인에게 각 매트리스를 지급하여 수용 거실에서 취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 7의 2. 매트리스(침구의 제식) 규정을 보면, 매트리스의 규격은 일반 매트리스의 경우 1인당 면적은 1.38㎡이고, 환자의 매트리스는 1인당 면적이 1.58㎡입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 7의 2.

교정시설 내 지급하는 매트리스의 1인당 면적	
일반 매트리스	환자 매트리스
<p>1인당 면적 = 1.38㎡</p>	<p>1인당 면적 = 1.58㎡</p>

원고가 생활한 기간 중 1인당 수용면적이 2㎡에 미달된 날은 약 120일이며, 위 120일 동안 치료거실에서 생활하였던 원고는 위 환자 매트리스 규격을 참고하여 볼 때, 적어도 1.58㎡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추가 입증방법 예시

- 을 제38호증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7의 2] 매트리스
- 을 제39호증 공군본부 물자과 구매요구서(매트리스)
- 을 제40호증 2023년 구매물품 코드 및 가격표
- 을 제41호증 원고의 작업장려금 현황
- 을 제42호증 2023년 제1회차 외부 전문업체 방역소독 실시 결과 보고

주장 7) 교정시설 내 수용거실은 구조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에서 일반 가정의 거실과 다르므로 과밀의 기준과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의 구조적인 면에서 수용거실은 조리공간(주방)이 없고, 수용자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배식 받는 점, 가구(침대,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점, 샤워 및 목욕시설이 거실 외부에 있는 점, 개인 물품 중 부피가 크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겨울 이불, 도서 등)은 교정시설 보관물품 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택배 등으로 가족반환을 하는 점, 운동시설 및 공간이 거실 외부에 있는 점, 세탁실이 거실 외부에 있는 점, 수용거실에 인접하여 넓은 복도가 있는 점, 수용자들의

일상생활 측면에서 주간에는 운동, 점견, 출정, 교육, 작업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점, 이송(형확정 등) 및 출소(형기종료, 가석방 등) 등으로 빈번하게 거실인원수가 변동하여 수용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수용거실이 침대가 아닌 온돌식 거실구조인 점, 한국인의 체형(평균신장 등)이 서구인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로지 1인당 공간 2㎡를 기준으로 과밀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교정시설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장 8) 그렇다면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인 원고를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 함으로써 원고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인지 살펴보면 ①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은 제한적이지만 피고로서는 임의로 수용자의 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기존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는 점, ③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추가로 신설할 수밖에 없는데 과밀수용의 문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④ 수용자들로서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생활의 불편함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가 수용된 공간보다 더 좁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들도 존재하는 점, ⑥ 수용자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는 교정시설의 면적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교정시설 전반과 제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⑦ 미결수용자의 경우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현황이 양호한 원거리의 구치소로 이송하기도 어려운 점, ⑧ 구급시설 수준의 개선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부의 경제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수용자인 원고를 과밀수용함으로써 원고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2심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 판결문 주요 내용

다행히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국가배상 위자료로 120만 원을 인용하였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1인당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1심 판결에서 사용한 실측면적이 아닌 도면상 면적(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기준으로 판단하

였다. 그 결과 8명이 생활한 경우에도 도면상 면적에 따라 1인당 2.13㎡의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일상생활과 수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적어도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간적 존엄성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급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성인 남성인 원고를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58㎡에 미달하는 공간에 과밀수용하여 원고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 나)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

침 제2조 [별표 기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을 제29조 내지 33, 38, 39, 40, 41, 4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적절한 수용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원고를 수용하여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였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1. B교도소로 이감된 이후로 치료거실에 수용되었고, 원고가 치료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17.10㎡이다. 원고가 B교도소로 이감된 2017. 12. 1.부터 2020. 7. 14.까지 치료거실의 수용인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이었다. 최대인원이 치료거실에 수용되었을 때에도 치료거실의 1인당 도면상 면적은 2.13㎡로 원고는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이상 확보된 공간에 수용되었다.

②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과 어깨너비에 비추어 보면, 더블 사이즈 침대의 규격에 해당하는 1인당 1.4㎡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물론 수면 시 모로 눕지 않고 똑바로 눕더라도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용된 치료거실의 경우 최대인원이었던 8명이 수용되었을 때에도 1인당 2.13㎡의 공간이 확보되었으므로, 원고가 일상생활 및 수면을 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우리나라 교정 당국은 수형자들이 수형기간 동안 건강하게 수형생활을 마친 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관금으로 수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에 있는 가족·지인 등과의 접견, 편지,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정서안정 및 지식·교역습득을 위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종교 활동,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복귀 후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춘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35449 판결 -

3.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

(1) 사건 개요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정시설에서 5년(1,825일) 동안 1인당 2㎡에 미달하는 거실에 과밀수용되어 인간

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1,82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 경과

- 2021. 8. C교도소 출소자 고○○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22. 10.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894174 판결 (원고 위자료 100만 원 인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
- 2023. 11.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판결 (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인용, 원고 패소,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 2023. 12. 원고 상고하지 않음. 원고 패 판결 확정

(2) 1심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894174 판결문 주요 내용

1심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과밀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서 약 116일의 과밀수용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위자료 100만 원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간략 이유

○ 관련 법리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 인정사실 및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수용기간 중 ○○교도소에서 2017. 6. 20. ~ 2019. 6. 27. 기간(8일) 수용되었던 거실의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2.94 ~ 1.76㎡이고, 2020. 6. 22. ~ 2020. 10. 7. 기간(108일) 수용되었던 거실도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2.20 ~ 1.7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면이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이 약 1.4㎡인데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벽과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면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서 수용된 것은 과밀수용으로서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원고의 과밀수용 기간(총 116일) 및 피고로서도 추가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고, 예산 등 한계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교정시설을 개선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소89417 판결 -

(3) 2심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피고의 항변과 판결문 주요 내용

가. 2심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1심에서는 안타깝게도 피고가 특별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성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내용이 대부분 전주지법, 춘천지법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내용과 겹치므로 항변의 많은 부분은 생략하였다.

주장 1) 수용거실 면적과 관련하여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훈련 제848호로 개정된 것)」、「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6. 12. 29. 법무부예규 제1135호로 개정된 것)」에 수용정원 산정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2.58㎡'이 언급되어 있으나, 위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구치소 등의 시설 신축·중축 시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수용기록·이송업무 및 수용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이고, 과밀 수용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면적 산정 기준은 1인당 2.58㎡이나 예상했던 경우보다 수용되는 인원 수가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과밀 수용의 사례에 이러한 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고를 수용했던 당시 기간이나 수용자 수가 교정시설의 가용 수용 면적보다 많은 인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지켜서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용자, 노역집행 수용자, 양형기준의 강화로 인한 장기형 수용자의 증가 등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은 수용 예상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입증방법 예시

을 제1호증 양형기준의 강화 및 구속영장 발부의 증가

주장 2)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및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장 3) 원고는 교정시설 수용 중 대부분의 기간을 2㎡ 이상 1인당 거실면적을 제공받았으며, 교정시설에서 적어도 1.4㎡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주장 4) 원고가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이었다던 ○○교도소에서 수용 중, 원고는 꾸준히 직업훈련, 작업장에서 작업 등을 하였으며, 원고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통하여 받은 작업 수당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입증방법 예시

을 제2호증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 7의 2. 매트리스
을 제3호증 원고의 작업 장려금 수령 및 사용 내역

나. 2심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판결문 주요 내용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국가배상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교정시설에서 낮 동안은 작업, 운동, 목욕 등 다른 장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수용자의 활동범위가 위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1인당 수용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수면시간과 그 전, 후의 일부 시간대에 한정되는 점, ㉡ 원고 역시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과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꾸준히 직업 훈련을 받거나 이에 기초한 작업활동을 하여 온 점, ㉢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이고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에게 제공된 수용면적은 모두 위 매트리스의 면적 이상인 점, ㉣ 형집행을 받는 수용자의 인원은 매일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빈번하게 변동될 수 밖에 없어 별지 수용내역표의 ㉡ 실제 수용인원란에 기재된 수용인원이 실제로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실제 수용인원이 빈번하게 변동되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에게 제공된 수

용면적 역시 수시로 변동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1.76㎡ 정도의 수용면적이 제공된 기간이 해당 거실에서의 수용기간 내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6. 20.부터 2019. 6. 26.까지 8일간, 2020. 6. 22.부터 2020. 10. 7.까지 108일간 원고에게 제공된 평균 수용면적이 2.94㎡ 또는 2.20㎡내지 1.76㎡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용면적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제공된 수용면적 규모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수용자인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76729 판결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주요 항변 내용과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과밀수용 변론을 위하여는 원고에게 도면상 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최소 2㎡ 이상의 면적이 제공되었으며, 혹 2㎡ 미만인 기간이 일부 있었다라도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그 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하였으며, 과밀수용이 인권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채광·통풍·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창고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줄여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과밀수용 변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교정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수용자 인권 보장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 모두께 감사드리고, 교정시설이 확충되어서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미래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박상열
광운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목차

- I. 서론
- II. 일본의 고령범죄자 현황
- III. 고령범죄자를 위한 출구지원과 입구지원
- IV. 일본경찰의 입구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제안
- V. 결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경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경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주제어: 고령범죄자,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재범방지, 사회복귀

I. 서론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 노인빈곤, 의료비용의 증가, 세대 갈등, 노

인의 소외와 고독, 노인부양 및 돌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총조사의 결과¹⁾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22,507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0.3%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65세의 고령인구는 전년도보다 약 34만 명이 많은 7,171,227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였다. UN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며, 14% 이상은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지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속도는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비교하여 7년이나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²⁾.

당연한 것이지만 고령사회의 단면에는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³⁾. 또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61세 이상 전체 노인범죄자 118,222명 중에 20,531명(17.4%)만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전과자 비율이 약 80%를 상회하였고 61세이상 노인범죄자 중에 전과 9범인 이상인 자도 10,114명(8.6%)으로 나타나는 등⁴⁾ 노인범죄자의 재범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되고 있다⁵⁾.

하지만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개입 또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근의 고령자 범죄의 증가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령사회인 일본에서도 종래부터 고령자에 의한 범죄증가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최근의 일본교정의 주요과제가 종래의 「과잉구금」에서 「고령수형자」 문제로 변화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어 범죄백서와 교정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고령수형자의 증가율은 일본사회의 고령화율의 상승비율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정부는 고령자에 의한 범죄증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⁷⁾, 최근에는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일본검찰에서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⁸⁾.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형사정책 특히 갱생보호와 복지와의 관계에 주목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 처우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일본의 고령범죄자 현황

일본의 총인구는 종전직후인 1945년에 7,215만 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7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에는 1억 2,808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2015년의 경우 1억 2,711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인구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보면 14세 이하의 경우에는 1950년 이후 거의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으며, 15세~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1992년의 69.8%를 정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1950년대에 5%에 불과하였던 고령화률(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1985년에는 10.3%, 2005년에는 20.2%로 급속하게 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26.7%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⁹⁾. 이러한 증가추세 등을 고려한다면 2060년까지 고령화율은 지속적

6) 예를 들어 2017년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4.9%였던 고령 신수형자율이 2017년에는 12.2%로 약 2.5배 정도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 犯罪白書」第4編第8章第2節2矯正(2017年) http://hakyusyo1.moj.go.jp/jp/64/nim/n64_2_4_8_2_2.html

한편, 이러한 고령수형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수형자의 증가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에 실시하는 「능력검사(CAPAS(IQ수치에 상당))」에서 70미만의 수치를 나타내는 자가 20%이며, 지적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로 진단되는 자도 13.4%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7年矯正統計年報」(2018年) 新村繁文「恒例受刑者の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法学セミナー』754号(2017年)15頁.

7) 예를 들어 法務総合研究所에서 2008년에 발간한 일본 범죄백서에서는 「고령범죄자의 실태와 처우」로 특집을 발간하였다. <http://hakyusyo1.moj.go.jp/jp/55/nim/mokuj.html>

8) 葛野壽之「検察官の起訴裁量権と再犯防止措置」『法律時報』第89卷第4号(2017年)12頁.

9) 「2018년판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17년 10월 1일 현재의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인구는 3,515만 명(전년도 3,4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점하는 비율도 27.7%(전년도 27.3%)로 나타나 심각한 고령사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8/html/gaiyou/s1_1.html 참조

1) 통계청, 2017년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인구, 2018.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참조.

2) TBS교통방송, 우리나라, 고령사회로 진입... 생산연령인구는 첫 감소, 2018.08.27.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297937

3) 예를 들어 2011년의 경우 고령강력범죄자의 수는 759명이었으나 2017년도는 1,808명으로 급증하였고, 절도의 경우에도 4,193명에서 11,431명으로 증가하였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11년도, 2017년도 참조.

4)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812면 참조.

5) 법률신문, 고령자 범죄 급증... 교정시설도 곧 '고령화 시대'로, 2018.10.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906>

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60년에는 약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⁰⁾.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고령자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을 야기하였다. 먼저 일본의 전체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2017년도 범죄백서」에 따르면 형법범의 인지건수는 1996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는 3,693,928건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289,47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996,120건으로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¹¹⁾. 한편, 2010년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형법범 검거인원은 48,162명으로 2001년의 20,113명과 비교하여 약 2.4배가 증가하였다¹²⁾. 이에 따라 고령자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표1>은 일본의 고령수형자(65세 이상)의 인원 및 고령자율의 추이이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령수형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전체 수형자 중에 12.2%를 고령수형자가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범죄는 증가하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범죄의 증가원인을 단순히 일본사회의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1988년에서 2007년까지의 20년간을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약 2배가 증가한 것에 반하여 고령자에 의한 일반형법범의 검거인원은 4.9배가 증가하였고, 신수형자의 수도 6배로 증가하는 등 고령자인구의 증가폭보다 빠른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표2 참조>.

<표1> 일본의 고령자의 입소수형자 인원 및 고령자율의 추이 (2001년~2006년)

연도	총수	65세 이상				고령자율
		전과			합계	
		1	2~5	6이상		
2001	28,469	270	227	529	1,026	3.6
2002	30,277	288	240	569	1,097	3.6
2003	31,355	415	284	652	1,351	4.3
2004	32,090	412	318	627	1,357	4.2
2005	32,789	448	432	717	1,597	4.9
2006	33,032	593	510	779	1,882	5.7
2007	30,450	561	525	798	1,884	6.2
2008	28,963	614	633	845	2,092	7.2
2009	28,293	567	704	829	2,100	7.4
2010	27,079	589	635	880	2,104	7.8
2011	25,499	612	629	787	2,028	8.0
2012	24,780	584	734	874	2,192	8.8

10) 厚生労働省「平成28年版 厚生労働白書」(2016 年)4-5頁

11)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 犯罪白書」第1編第1章第1節(2017年) http://hakusyoi.moj.go.jp/jp/64/nfm/n64_2_1_1_1_1.html

12) 2010년 이후의 경우에도 2011년 48,637, 2012년 48,559명, 2013년 46,243명, 2014년 47,252명, 2015년 47,632명, 2016년 46,977명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http://hakusyoi.moj.go.jp/jp/64/nfm/n64_2_4_8_1_0.html

연도	총수	65세 이상			합계	고령자율
		전과				
		1	2~5	6이상		
2013	22,755	605	754	869	2,228	9.8
2014	21,866	645	778	860	2,283	10.4
2015	21,539	702	740	871	2,313	10.7
2016	20,467	745	831	922	2,498	12.2

주: 1. 교정통계연보에 의함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犯罪白書」第4編第8章第2節(2017年¹³⁾)

<표2> 형법범 검거인원의 연령층별 구성비의 추이 (1988년~2016년)

연도	총수	14-15	16-17	18-19	20-24	25-29	30-39	40-49	50-59	60-64	65-69	70이상
1988	398,208	96,023	68,826	27,907	39,332	22,227	46,295	47,416	31,160	8,134	4,510	5,378
1989	312,992	83,579	59,481	22,626	30,925	17,444	32,181	34,046	30,590	5,495	3,197	3,428
1990	293,264	73,443	58,072	23,278	31,371	16,721	27,874	31,846	19,100	5,215	3,223	3,121
1991	296,158	67,121	56,809	26,418	36,796	18,075	26,668	31,913	19,707	5,523	3,479	3,649
1992	280,908	57,350	50,535	26,807	37,665	18,603	26,354	32,519	21,180	6,154	3,840	3,901
1993	297,725	57,807	49,785	26,387	39,268	19,996	28,039	35,354	24,197	7,578	4,615	4,699
1994	307,965	55,289	50,602	26,315	41,227	21,855	28,928	36,941	27,570	8,488	5,359	5,658
1995	293,252	53,454	50,116	23,477	36,528	20,620	27,893	34,480	26,343	8,901	5,425	6,016
1996	295,584	55,306	54,750	24,168	34,984	20,010	26,674	32,782	25,387	9,080	5,910	6,513
1997	313,573	64,016	61,762	27,611	34,100	20,366	26,915	31,147	25,525	9,313	6,143	6,675
1998	324,263	66,127	61,968	29,886	35,717	21,039	28,006	30,174	27,940	9,667	6,899	6,840
1999	315,355	59,257	55,648	27,421	34,699	21,244	28,762	29,782	31,541	10,845	7,877	8,279
2000	309,649	56,310	52,490	24,214	32,377	22,025	31,114	28,576	33,380	11,221	8,464	9,478
2001	325,292	57,886	56,194	25,268	33,190	23,187	33,137	28,822	35,335	12,160	9,317	10,796
2002	347,880	56,535	58,689	27,398	34,855	23,854	37,454	31,065	39,658	14,125	11,074	13,173
2003	379,910	56,969	58,361	30,118	40,339	26,919	42,765	33,951	44,133	16,551	13,007	16,797
2004	289,297	52,389	53,907	29,522	14,696	27,001	45,589	35,758	47,011	19,722	15,376	21,326
2005	387,234	49,598	48,412	26,533	40,543	26,478	47,228	37,122	48,053	21,155	16,964	25,148
2006	384,630	45,564	13,853	24,153	39,794	26,952	49,885	38,291	48,657	20,830	17,756	28,895
2007	366,002	43,932	38,744	21,245	36,419	25,218	47,953	37,491	45,780	20,615	18,037	30,568
2008	340,100	39,818	33,651	18,051	31,921	23,534	45,418	36,925	41,368	20,609	17,631	31,174
2009	333,205	41,508	32,275	17,108	31,168	23,274	44,217	37,228	37,887	20,419	17,760	30,359
2010	322,956	39,019	30,325	17,104	29,677	22,448	43,007	37,436	35,186	20,592	17,171	30,991
2011	305,951	35,560	27,612	15,071	27,236	20,770	40,363	36,832	32,424	21,446	16,375	32,262
2012	287,386	28,723	23,682	13,615	25,839	20,050	39,460	37,468	30,250	19,740	15,679	32,880
2013	262,823	25,231	20,079	11,643	23,849	18,393	36,699	36,101	27,671	16,914	14,633	31,610
2014	251,605	21,135	17,026	10,726	23,100	18,129	35,623	36,638	26,829	15,147	15,024	32,228
2015	239,355	15,155	14,492	9,842	22,775	17,664	34,729	36,477	26,781	13,808	15,373	32,259
2016	226,376	11,170	11,802	9,023	21,841	17,133	34,036	35,883	25,969	12,542	15,386	31,591

주: 범행시 연령에 따름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犯罪白書」第4編第8章第1節(2017年¹⁴⁾)

이러한 고령자범죄의 증가원인과 관련하여 법무성의 특별조사에서는 ①경제적 불안, ②건강불안 및 체력의 쇠약, 질병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③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행정예의 불신, 안전망(safety net)의 문제, ④고집과 편협한 태도,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13) http://hakusyoi.moj.go.jp/jp/64/nfm/n64_2_4_8_2_2.html참조.

14) http://hakusyoi.moj.go.jp/jp/64/nfm/n64_2_4_8_1_0.html참조.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 ⑤소외감과 차별감, ⑥자존심, ⑦단념과 노숙인 지향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⁵⁾. 최근 일본사회는 독신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도 소원해져 점점 고립화되는 과정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립화가 더욱 심각하며 수입의 감소에 따른 생활고와 함께 고령자의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의 경우 자력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는 도피적인 행태로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경미한 범죄를 범하는 고령범죄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⁶⁾.

III. 고령범죄자를 위한 출구지원과 입구지원

2008년 일본정부는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2008」을 발표하여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구축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교도소출소자 등의 재범방지」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고령·장애 등에 따라 자립이 곤란한 교도소출소자 등이 출소직후 즉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 등에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한 상담지원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를 설치하여 각 都道府県の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협력체제를 갖고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의료교도소에 정신보건복지사를 배치한 것을 계기로 2016년에는 전국 10개소의 교정시설에 정신보건복지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정시설만이 아니라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및 市区町村의 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의 연락조정 등에 따른 지원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출소와 동시에 복지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수형자 등을 선별하여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실시하여 귀주처를 확보하는 특별조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¹⁷⁾. 이와 같이 교정시설 출소 후의 지원인 「출구(でぐち)지원」으로서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 의한 지원과 함께 최근에는 「입구(いりぐち)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즉, 재범고령범죄자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적절한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미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단계에서부터 복지적 지원이 실시된다면 그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또한 교정시설이라는 사회와 격리된 장소에서의 생활은 지금보다 사회적 능력을 더욱 감퇴시키는 것과 동시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부여됨에 따라 이후의 사회복귀가 더욱 곤란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실행판결을 회피하고 복지적인 조치로 연결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¹⁹⁾. 이와 함께 종래의 「출구지원」이 고령자 등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기에는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입구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여기에서는 고령범죄자에 대한 출구지원으로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각 지역검찰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구지원으로서 기소 유예제도를 활용한 조치 등에 대해서 개관한다.

1. 출구지원 -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²⁰⁾

출구(でぐち)지원이란 형사시설로부터 석방된 후 보호관찰 및 그 외의 복지적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죄를 범하여 형사시설에 수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령범죄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주처 및 복지서비스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 시책을 말한다²¹⁾. 2007년부터 형사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2009년에는 법무성(교정시설, 보호관찰소)과 후생노동성(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연계에 따라 귀주처가 없는 형사시설에 있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을 개시하였다²²⁾.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200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의 「안전망(safety net)지원대책 등 사업(セーフティネット支援対策等事業)²³⁾」 중의 하나인 「지역생활정착추진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09년 7월에 静岡県과 山口県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2012년 3월에는 전국 47개 都道府県에 48개소(北海道の

15) 木村隆夫·佐脇幸恵「高齢・障害犯罪者の社会復帰支援施策の現状と課題」『日本福祉大学社会福祉論集』第128号(2013年)87頁.
 1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건강과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 적극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전체 범죄는 줄었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범죄' 이슈특독, 고령자 범죄 5년 새 45% 증가, 2018.08.27.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26003144>참조
 17) 三木良子·浅沼太郎「刑事事件に 関与した障害者への「入り口支援」の現状と課題-東京における弁護士会と社会福祉職能団体の連携実践を通して-」『帝京科学大学紀要』第14号(2018年)2-3頁.

18) 浜井浩「高齢者・障がい者の犯罪をめぐる議論の変遷と課題-厳罰から再犯防止、そして立直りへ-」『法律のひろば』第67巻第12号(2014年)4-12頁.
 19) 斎藤哲也「刑務所における高齢者・障害者の処遇および福祉的支援の現状」『法律のひろば』第67巻第12号(2014年)29-34頁.
 20) 関口清美「刑事司法の対象となった高齢者・障害者の支援について-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の活動をとおして-」『社会安全政策研究』第6号(2014年)93頁以下 참조.
 21) 太田達也「福祉的支援とダイバージョン-保護観察付執行猶予・条件付起訴猶予・軽微処分-」『研修』第782号(2013年)3頁.
 22) 中村秀郷「刑事司法における入口支援(被疑者・被告人への福祉的支援)の現状と課題: 更生緊急保護と入口支援に関する一考察」『社会福祉士』第22号(2015年)21頁.
 23) 본 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수급세대 외에 지역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원호세대에 대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책정 및 자립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보호수급자를 포함한 지역의 원호자의 복지의 향상을 이바지하는 것에 있으며 20개 이상의 각 사업별로 실시요강이 규정되어 있다.

경우 2개소)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石川縣의 1개소이며, 그 외의 지역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NPO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는 단독형 또는 네트워크형, 장애인 지원, 고령 자지원, 생계곤란자 지원, 지역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사업이 개시된 2009년에는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2년도부터는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업목적 또한 「교정시설 퇴소 후 즉시 복지서비스 등에 연결하기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교정시설 입소 중에서부터 퇴소 후까지 일관된 상담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와 지역생활에의 정착을 지원하여 재범방지대책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였다. 동시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직원의 기본배치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고, 국가로부터의 보조기준금액도 1개소 1,700만 엔에서 2,500만 엔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에 개정된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 실시요령에서는 ①조정업무, ②사후지원업무, ③상담지원업무, ④지역의 네트워크구축과 연계촉진업무, ⑤정보발신업무 등 5가지를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①조정업무와 ②사후지원업무는 연동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고령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정착지원센터장에게 특별조정 등의 협력의뢰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착지원센터의 직원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면접과 조정 등을 실시하여 퇴소 후의 주거 등의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관계자가 함께 조정하는 것이 조정업무이며, 대상자가 교정시설로부터 퇴소한 후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사후지원업무이다²⁴⁾. 교정시설소재지의 정착지원센터는 대상자의 귀주처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귀주처의 정착지원센터에 지원업무협력을 의뢰하는 등 1인의 대상자에 대해서 다기관이 관여하는 광역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한편,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협력의뢰가 있는 자 이외의 고령 또는 장애 등이 있어 복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정시설퇴소예정자와 퇴소자 본인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담지원업무이다. 또한 2012년도의 실시요령개정에서는 「그 외의 센터가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착지원센터가 교정시설퇴소예정자와 퇴소자 외에 체포 및 기소단계의 자에 대한 지원까지 정식적인 업무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후생성의 집계에 따르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교정시설을 퇴소자는 2012년 659명, 2013년 628명, 2014년 743명, 2015년 752명, 2016년 694명에 이르고 있다.

24) 2009년 4월 17일부 법무성교정국장 및 법무성보호국장 연명통달 「고령 또는 장애에 의해 특히 자립 곤란한 교정시설수용 중의 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보호, 생활환경의 조정에 대해서, 별첨 실시요령에 특별조정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6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특별조정대상자이다.

2. 입구지원 - 검찰에 의한 기소유예제도의 활용

입구지원이란 교정시설 입소 전이라는 의미로 「入口(いりぐち)」단계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특히 고령 등의 이유로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를 복지관계기관에 연결하거나 생활보호수급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⁵⁾. 입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치는 아직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않은 단계에서 적극적인 복지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령범죄자의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Diversion)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⁶⁾. 이러한 입구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각 지역 검찰청으로, 대상자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과 함께 갱생보호시설에 연결하여 개선갱생과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재범방지조치와 연결된 기소유예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경미한 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고령자 등을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켜 필요로 하는 복지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²⁷⁾. 즉, 검찰청에 상근 또는 비상근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와 조정 등을 실시한 다음 기소유예의 결정 후에 복지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유형은 기소유예처분결정 후에 대상자에 대해서 재범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이지만, 기소유예처분결정 이전부터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복지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조사·조정하도록 한다. 다른 유형으로는 재택 또는 구속 중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재범방지조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 등의 조정을 한 후에 기소유예처분의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²⁸⁾.

이러한 2가지 유형을 비교하면 기소유예처분결정 후에 이루어진 유형은 대상자가 거주하면서 복지적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한 복지시설로부터 조기에 퇴거 하는 등 기소유예처분

25) 吉開多一「犯罪・非行をした者に対する就労支援の現状と課題」『早稲田大学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第7号(2014年)78頁.
 26) 安田恵美「福祉的ニーズを持つ被疑者への起訴猶予」『大阪市立大学法学雑誌』第60号(2014年)373頁.
 27)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신나가사키(新長崎)모델」,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모델」, 「갱생긴급보호의 중점 실시」 등이다.
 28)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동학대 및 가정 내 폭력의 피의자에 대한 「심리요법프로그램」, 생활지침인 준수사항을 정하는 「생활지침프로그램」, 仙台(센다이)지방검찰청 형사정책추진실의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 재택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의 정기적인 면담과 함께 갱생보호여성회와의 위탁 등의 환경조정조치를 강구하는 さいたま(사이타마)지방검찰청 형사정책종합지원실의 「재범방지 등 프로그램」 등이 있다. 葛野尋之「検察官の起訴裁量権と再犯防止措置」『法律時報』第89巻第4号(2017年)13頁.

결정 후에 이루어진 재범방지조치가 원만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라도 검찰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기소할 가능성은 낮고, 그 위하력 또한 거의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결정 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대상자 동의를 임의성의 확보가 용이하다. 이와 달리 기소유예처분결정 이전유형은 조사를 거쳐 일정한 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기소유예처분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소에 대한 위하력이 높아 조치에 대한 동의가 용이하여 재범방지조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조사 또는 조치 등에 대한 대상자 동의를 임의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⁹⁾.

이러한 대상자의 조치 등에 대한 동의를 임의성은 시책에 대한 비판의 중심내용이 되고 있다. 입구지원으로서 일본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책으로 東京지방검찰청과 센다이(仙台)지방검찰청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東京지방검찰청·사회복지지원실³⁰⁾

일본에서는 2010년 11월 검찰개혁이 시작되어 2011년 7월에는 최고검찰청에 「지적장애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정부의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결정되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추진이 각 지방검찰청의 업무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東京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처분 및 집행유예판결 등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석방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원활한 사회복지 지원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2013년 1월부터 「사회복지지원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심부서로서 「사회복지지원준비실」을 발족하였고, 동년 4월부터 「사회복지지원실」로 변경하여 재범방지정책을 추진하였다.

東京지방검찰청의 사회복지지원실은 실장검사와 사무관(수사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지원실의 업무로는 ① 개별사건의 지원에 대한 상담대응, ②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③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의 구축, ④ 홍보활동, ⑤ 복지 일반에 대한 상담대응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①의 개별사건의 지원에 대한 상담대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내용으로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로부터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한 필요한 복지, 의료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거나 조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대상자인 피의자와 그 가족과의 면담·조언 등을 실시한다. 복지사무소내지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업자의 사업소 등의 동행은 사무관이 전담하지만 그 외의 곤란한 사례 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협력한다. ②~⑤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도 필요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의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의 구축에서는 특별한 지원(예를 들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연계구축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연계를 새롭게 개척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지원실의 지원대상자는 불기소처분, 약식기소로 벌금 등의 재산형이 부과되거나 또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것 등이 예상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고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문제가 있어 자력으로는 사회복지가 곤란하여 그대로 석방된다면 재범을 범할 우려가 높아 원활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알코올의존, 약물의존, 알츠하이머 병 등)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노숙인, 빈곤자 등으로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사회복지지원실의 구체적인 지원형태를 보면, 먼저, 사건담당검사로부터 고령 또는 장애, 그 외의 사정으로 주로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석방 후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원책의 검토를 위한 상담신청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상담신청과 함께 자료가 사회복지지원실에 전달된다. 사회복지사는 자료 등을 근거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실장검사와 함께 사건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후, 몇몇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원의 방향성을 협의·결정한다.

지원의 중심인 복지·의료 등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피고인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협력을 의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자의 요청을 청취하고 복지·의료 등과 관련된 설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대상자의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지능검사 및 알츠하이머 증상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정신장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간이정신검사를 실시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책임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장애의 유무 및 상태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석방시기에 맞추어 지원책에 따라 관계기관에 연계하는데, 관계기관은 주로 복지사무소이지만 장애복지과, 보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고령복지과, 보호관찰소, 의료기관 등 지원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수의 기관이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2) 센다이(仙台)지방검찰청의 입구지원³¹⁾

전술과 같이 일본검찰은 2011년 검찰의 사명과 역할의 명확화와 검찰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정하여 교정시설의 출소시기에 이루어지는 출구지원만이 아니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단계에서 재범방지와 갱생지원을 실시하는 입구지원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29) 葛野尋之, 前掲論文, 13頁.

30) 小林良子 「刑事事件における社会復帰支援について」 『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 第9号(2016年) 참조.

31) 千田早苗 「仙台地方検察庁における入口支援の現状と課題-刑事政策推進室における再犯防止と更生支援及び被疑者・遺族支援について-」 『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 第7号(2014年) 215頁 참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센다이지방검찰청에서는 2013년 6월에 「죄를 범한 고령자·장애자 지원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동년 9월 1일, 「죄를 범한 고령자·장애자 지원위원회」는 「형사정책추진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내용도 종래의 고령과 장애인 등만이 아니라 일정한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모든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사법으로부터 복지로 연결되는 지원을 검토·조정하는 부서로 형사부내에 설치되었다. 동년 10월 1일에는 추진실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를 비상근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적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추진실 업무에 「범죄피해자지원추진위원회」를 흡수하여 형사절차 중에서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실은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재피해 방지, 그리고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갱생지원을 실시하는 부서로서 새롭게 정립되었다. 센다이지방검찰청의 형사정책추진실은 재범방지 및 갱생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5가지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①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³²으로 기소유예처분자를 대상으로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호카드를 교부하고 사회복지 후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지원의뢰를 하여 주거,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구속 중의 피의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소가 사회복지조정관과 보호관찰관으로 구성된 「사회복귀지원Unit」가 면담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후의 지원체제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면담은 형사처분내용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의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2015년도부터는 모든 검찰청에서 갱생긴급보호의 중점실시 등의 시범사업이 개시되었으며, 각 청의 상황 등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변호사회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실시하고 있다. 갱생긴급보호중점실시의 대상자는 보호관찰소가 시설에 입소시킨 후 중점적인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지원으로 대상자가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석방 후 약 3개월 이내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스스로의 갱생에의 노력과 사회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자세가 있을 것을 요한다. 다음의 ②보호회의에 의한 갱생지원이다. 형사정책추진실이 갱생보호사전조정에서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의심되는 고령자 등으로 조기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면담과정에서는 자치단체, 장애인상담지원사업소, 포괄지원센터, 의료관계자

및 피의자의 가족 등의 지원자가 집결하여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외 ③장애 등의 특성을 배려한 정책의 실시이다. 형사정책추진실에서는 검찰 등으로부터 상담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실시하며, 특히 장애 및 고령의 피의자에 대해서 정확한 권리의 고지와 의사의 소통정도에 따라 검찰에게 조언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즉, 대상자에 대해서 센다이변호사회에 고령자와 장애인의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찰에 대해 피의자를 석방하여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에 따른 재범방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제언을 한다.

다음으로 ④형사재판에서의 탄력적 제도의 이용이다. 아무리 고령자 또는 장애라고 하여도 범행당시의 책임능력과 범행의 정도, 그리고 내용 등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정책추진실의 복지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 정식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 추진실은 갱생교육을 염두에 두고 보호관찰부집행유예의 구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⑤형사정책추진실이 개발한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의 운용이다. 형사정책추진실은 독자적인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독자적인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은 먼저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자에 한하여 임의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한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 중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처분보류로 신병을 석방하여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피의자의 특성과 인권, 그리고 장애정도 등에 배려하고 있다³³⁾.

IV. 일본검찰의 입구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제안

1. 재범방지조치와 연결된 기소유예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비판

전술과 같이 일본검찰의 기소유예를 활용한 재범방지조치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의 원칙 및 기본구조와의 관계성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33) 프로그램으로는 다음의 4종류가 있다. 즉, ①지원자가 있는 장애 및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프로그램(지원자프로그램), ②폭력성향이 있는 자에 대한 심리요법프로그램(심리요법프로그램), ③생활지침으로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생활지침프로그램), ④보호관찰부집행유예 중의 재범자에 대한 프로그램(재범자프로그램) 등이다.

32) 2015년 4월 1일부터 갱생긴급보호의 중점실시 등의 시행과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었다.

같다. 먼저, 동의의 임의성문제이다. 기소유예처분결정 후 이루어지는 「입구지원」과 관련하여 재범방지조치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와 조정이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및 기소유예 후에 제공되는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피의자에게 기소의 위협에 따른 심리적 강제가 발생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기소 후 유죄가 선고되어 실행의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위협에 따른 심리강제, 다시 말하면 유인으로서의 기소유예의심리강제에 따른 동의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전에 재범방지조치에 동의하면서 결정 후에 재범방지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이 조사와 조치에 대한 피의자 또는 유예자의 동의에 임의성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재범방지조치는 실질적으로 기소유예의 조건이 된다³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강제가 있어도 기소유예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약사항을 준수하거나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에 심리적 압박조차 전혀 없는 임의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본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시점에서 기소유예를 암시하며 자백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지원과 조치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기소유예 그 자체에 내재하는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확인이 선결이며 그 전제하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 동의에 심리적 규제조차 없는 완전한 임의성을 요구하는 견해는 무고한 피의자에게 허위의 자백을 강요할 위험성을 우려한 것으로, 그러한 위험성은 아무런 조치도 없는 단순 기소유예의 경우가 더 높으며 일정한 지원과 조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오히려 낮다고 주장한다³⁵⁾.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즉, 유죄·실행으로 연결되는 기소의 위협에 따른 심리강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유죄인정에 기초한 처우결정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유예의 결정에 따른 재범방지조치에 대한 동의로 그 필요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임의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한편, 일본검찰에 의한 「입구지원」은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동의의 임의성도 의문시 되는 등, 실질적인 강제조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적정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또한 법원의 유죄인정에 앞서서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조사를 실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저촉한다고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재범방지조치에 관한 조사와 조정을 위하여 상세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소 및 불기소 결정전의 절차가 비대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재범방지조치와 결합된 기소유예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 기소가 점점 더 엄격히 선별되면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³⁷⁾.

이에 대하여 검찰은 범인의 성격과 상황 등의 사생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³⁸⁾, 범행의 배경에 범인의 특성과 환경상의 문제가 관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찰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실무에서도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행위책임의 경중만으로 기소 및 불기소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³⁹⁾. 마지막으로 검찰의 기본적 지위와 역할과의 정합성 문제이다. 재범방지조치와 연결된 기소유예의 결정은 검찰이 실질적인 유죄인정에 기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되며, 그러한 적극적인 처우결정을 검찰에게 위임하는 것은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이 법원과 동등한 입장에서서 법원의 직권행사를 보조한다는 검찰의 「준사법관적」성격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소추기관의 당사자로서의 검찰의 기본적 지위와 역할에 정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⁴⁰⁾. 한편, 처분결정전에 이루어지는 조치에 대해서는 재범방지조치에 관한 조사와 조정만이 아니라 재범방지조치의 제공 모두가 기소 및 불기소의 결정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소의 위협에 따른 강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여 조사 및 조치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이 더욱 희박해져 결과적으로 재범방지조치가 더욱 강하게 기소유예의 조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 경우 적정절차와의 저촉은 더욱 심화되며, 무죄추정의 법리와의 모순, 수사 및 조사의 비대화와 공판중심주의의 후퇴, 검찰의 기본적 지위와 역할의 부정합이라는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된다고 비판한다⁴¹⁾. 이와 같이 검찰의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에 대한 비판의 중심은 대상자의 동의의 문제와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이에 따른 수사의 비대화 문제, 법적인 근거의 부족, 그리고 대상자가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재기소의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지적은 대상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34) 葛野尋之「検察官の訴追裁量権と再犯防止措置」『法律時報』第89巻第4号(2017年)15頁。
 35) 太田達也「起訴猶予と再犯防止措置—積極的活用と条件付起訴猶予の導入に向けて—」『法律時報』第89巻第4号(2017年)7頁。
 36) 葛野尋之、前掲論文、15頁。

37) 葛野尋之、前掲論文、15頁。
 38) 일본형사소송법 제248조 범인의 성격, 연령 및 경우, 범죄의 경중 및 상황과 범죄 후의 정향에 따라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39) 太田達也、前掲論文、8頁。
 40) 葛野尋之、前掲論文、15頁。
 41) 葛野尋之、前掲論文、15-16頁。

2.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제안

일본검찰의 재범방지정책(입구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의자가 조치에 따를지의 여부이다. 아무리 본인의 동의가 있고 본인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여도 피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전형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는 일정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조치는 피의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 사후형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은 다소 완화되지만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리규제가 약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지원과 조치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소하는 것은 종래의 소추관행에 비추어 곤란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기소유예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에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사건의 재기소를 검토하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에 그 내용과 절차를 법정하는 것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⁴²⁾. 즉, 우리나라의 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의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준수사항과 처우프로그램에의 참가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여 기소유예 후에 각각의 조건의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및 이행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기소 또는 조건의 변경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적 지원은 그 자체를 조건으로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 및 이행할 사항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와 처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법이 완전히 복지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과 복지가 함께 대응하면서 대상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면서 사회생활에의 정착에 따라 서서히 사법적인 조치를 배제하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부기소유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즉, 사건재기의 적극화의 논의는 사건재기라는 위협에 의해 그리고 조건부기소유예의 제도화의 논의는 조건의 엄격화와 사건재기의 위협을 기초로 준수와 이행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 재범방지조치를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하는 형태로 양자의 결합을 더욱 강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복지적 지원에 관한 피의자 또는 유예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 동意的 임의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또한 기소유예는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 처우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진다. 재범방지조치

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도 상세한 정황조사와 함께 더욱 철저해 진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피의자와 유예자의 동意的 임의성은 희박해지고, 걱정절차 및 무죄추정법리와의 저축, 수사 및 조사의 비대화와 공판중심주의의 후퇴, 그리고 검찰의 준수법관적 성격의 승인이라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되기도 한다⁴³⁾.

V. 결론

기소유예는 재판과 형벌에 의한 낙인을 회피하고 조기에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소유예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범죄인에 대해 아무런 사후대책 없이 기소유예처분으로 방면하는 것은 사회를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형벌에 따른 부작용을 회피함으로써 갱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소극적인 효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⁴⁴⁾.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고 하여도 범행의 배경에 고령 내지 빈곤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를 통상적인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형사소송법 제247조)」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단기준은 크게 행위책임의 정도와 예방의 필요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이 중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는 재범방지(예방)의 필요성이 높으나, 행위책임의 정도와 예방의 필요성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책임은 중하지만 예방의 필요성이 낮은 자가 있는 반면, 행위책임은 경하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자가 있다. 즉, 행위책임으로부터는 기소유예가 상당하여도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자가 있다. 또한 행위책임으로부터는 기소상당이거나 기소와 기소유예의 경계선상에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 고려되는 범죄자도 있다. 이러한 자를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조기에 사회복귀와 낙인회피를 도모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조건부기소유예는 새로운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과 대상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최근의 고령범죄자에 대한 일본검찰청의 재범방지정책의 의의이다⁴⁵⁾. 다만, 일본검찰의 입구지원으로서 재범방지

42) 太田達也, 前掲論文, 8頁. 예를 들어 형의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할 수 없다. 갱생긴급보호에 의한 지원도 석방 후 6개월로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更生保護法第85条)

43) 葛野尋之, 前掲論文, 16頁.

44) 오영근, 최병각,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년, 17면.

45) 太田N達也, 前 掲論文, 6-7頁.

조치와 결합된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전술과 같이 대상자 동의의 임의성 확보와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이에 따른 수사의 비대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동의의 임의성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기소 및 불기소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⁴⁶⁾. 즉,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변호인의 원조가 중요하다고 한다. 변호인이 조사 및 지원에 대해서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검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시 설명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는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검찰이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형사절차의 원칙과 기본구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⁴⁷⁾. 고령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심신의 문제점과 질병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격과 행동특성으로부터는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배제상황으로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복지제도의 확충과 사회적인 활동장소의 확충,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도의 검토, 지역사회 협력체제의 확립 등과 같은 정책과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검찰청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입구(いりぐち)지원」은 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의한 재범방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국제적인 형사정책의 흐름인 사회정책과 민간조직이 연계한 정책의 시도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형집행비율이 매우 높으며, 기소유예처분내지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⁴⁸⁾. 전술과 같이 노인범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형집행 종료 후에는 재취업이 더욱 힘들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배제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의 고령범죄자에 의한 재범의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인범죄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종래의 선도조건부내지 상당부 기소유예제도가 아닌 고령자의 특징을 부합하는 사법과 복지의 적극적인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의 추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46) 葛野壽之, 前掲論文, 17頁.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동의의 임의성(혹은 자발성)의 제약과 관련된 지적은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가 있다. 오영근, 최병각, 전계서, 89면.

47) 葛野壽之, 前掲論文, 17頁

48) 선영화, 강동욱,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18년, 67면.



우수 수사관 및 우수 정보관 증서 수여식



일시 12. 19.(화) 10:30
주요 내용 - (우수 수사관) 포항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 교위 금동윤
 - (우수 정보관) 서울동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박구동

한국교정학회·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시간·장소 12. 12.(화) 13:00~18: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제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 처우의 현황과 과제

교정본부장, 백석대학교 특강



일시 12. 5.(화) 13:00
대상 백석대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등 70여 명
주요 내용 교정홍보영상 상영, 본부장 특강 및 질의응답 등

법무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식



일시·장소 12. 15.(금) 11: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교정본부) 본부장 등 7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7명
주요 내용 출소예정자 대상 취업연계 및 창업교육 지원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전광호

'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5동 소회의실에서 교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위직 대상으로 최근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성희롱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기부금품 접수

서울구치소는 12월 18일 서울구치소 기독교분과위원회와 화성시 우정읍 생활개선회로부터 백설기, 쌀강정을 기부받았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교정시설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12월 18일 교정동우회 안양지회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정동우회 안양지회의 회원들은 과거의 수용관리 경험을 회고하고, 직원들과 연료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실무수습 실시

수원구치소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규교정직 9급 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였다. 총 7명의 교육생들은 첫 날 총무과를 시작으로 출정, 보안과 야간근무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공무직 근로자 대상 직장 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2월 14일 청사에서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

로 '성희롱 예방 등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의 정의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 실시 하였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직원 격려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인천구치소에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을 위해 12월 20일 청사 앞에서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간식을 먹으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이 기재되어 있는 청렴 수첩을 같이 배부하며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남부보라미어린이집 방문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20일 성탄절을 앞두고 법무부 남부보라미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아들과 성탄절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서 직원들은 다가올 성탄절을 맞이하여 원아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원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사랑나눔 기부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2일 기관 소재지 인근 아동센터 등에 직업훈련 제빵류를 전달하는 쾌찬차 사랑나눔 기부를 실시했다.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에 직업훈련교육생들이 만든 팔빵을 기부하여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조영

업무협약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2월 11일 '의정부교도소와 연세요양병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특별한 보호가 필

요한 수용자에게 정신과 진료를 통한 수용생활 안정 유도를 위해 체결하였다.



여주교도소 / 교도 신재훈

대체복무 운영위원 위촉

여주교도소는 12월 21일 청사에서 대체복무 운영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 류동수 소장은 "대원들과 직원들이 조화를 이루어 대원들이 건강한 복무 생활을 할 수 있고, 각 과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교정교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2월 11일 서울남부교도소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춘천교도소/교도 박상혁

생활관 개관식 실시

춘천교도소는 12월 11일 대체복부 생활관 개관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대체복부 대원에 대한 입소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육근우 소장은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공무 수행자로서 청렴한 공무수행에 앞장서서 성실하게 대체복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송년회 행사 개최

원주교도소는 12월 20일 2023년 교정협의회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승자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 7명에게 소장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원주교도소 어울림 음악동호회의 축하공연으로 송년회를 더욱 빛내었다.

강릉교도소 / 교감 전홍재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참관 실시

강릉교도소는 12월 19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을 마친 후 진행된 제2차 회의에서는 수용자가 심부름 대행업체를 통해 무분별한 음란도서를 반입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교정시설 참관 실시

영월교도소는 12월 1일 영월 관내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인들은 교정 홍보영상 등을 시청한 후 구내시설을 참관하였다. 윤상륜 소장은 "유관기관 참관을 통해 교정 행정을 이해하며, 관내 기관과의 소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수용자를 위한 떡 기부 행사 및 감사장 수여식

강원북부교도소는 12월 6일 수용자를 위한 떡 기부 행사 및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 감사장을 수여 받은 전제원 교정위원은 "연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교정시설에서 지내는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청렴클러스터 청렴 플래카드 제작 및 홍보 활동

평택지소는 12월 13일 평택 법조타운 내 위치한 평택지청, 평택 지원 청렴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평택 법조타운 각 기관 외벽에 새로운 청렴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소망교도소 / 8직급 황재민

교도소 시설 참관

소망교도소는 12월 6일 국제적 친선 교류를 위하여 대만 공립



타이페이 대학교 범죄학연구소 JOU SUSYAN 교수 등 33명의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친선 교류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교정행정 및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사 임경태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12월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무단 검색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수용기록 카드 열람에 관한 유의사항」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교육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소방안전 교육 실시

대구교도소는 12월 19일 강서소방서 119하반기지역대 소방위 오병열 등 2명을 초청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응급환자 처치 및 재해 대응을 위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는 12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변화·발전된 부산구치소 교정행정 홍보를 통해 교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기관 직원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헌배

성탄절 수용자 특식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성탄절에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를 위해 피자빵과 음료수를 각각 1,400개씩 기증하였다. 장종선 소장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식 기증을 해준 교정협의회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수용생활 체험

창원교도소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14명 판사

와 직원을 대상으로 ‘참관 및 1박2일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창원교도소와 마산지원 간의 협의로 이뤄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윤

장학금 수여

부산교도소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 학생 중 어려운 가정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는 12월 15일 학천초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주정민 소장은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함으로써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교정행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였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진도교도소 참관

진주교도소는 12월 7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이 진주교도소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심리치료센터 등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 방점을 두고 시행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재원

캠페인 및 음주단속 실시

대구구치소는 12월 13일 출근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및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국민 등으로부터 더욱 지탄받아 마땅하기에 공직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박성국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5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1~2학년 학업 우수생 등 14명과 3~6학년 학업 우수생 5명의 학생에게 총 24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사 조남영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는 12월 20일 안동시 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3명의 졸업생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퇴직준비교육 기념행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2월 19일에 강성현 소장님의 퇴직준비교육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강성현 소장은 “지금은 헤어지지만 앞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때까지 모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응원을 건넸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창작뮤지컬 공연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12월 7일 소년수형자들의 새 삶에 대한 희망과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지역 내 관계 기관장을 비롯해 교정위원 및 수형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수용자 복지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2월 22일 ㈜하나레이제테크 임창빈 대표로부터 컵라면 900개를 기증받았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한정된 예산 등의 이유로 수용자 처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유관기관 합동 종합소방훈련 실시

울산구치소는 12월 6일 유관기관인 울산 남울주소방서와 연계하여 합동 종합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시설물 보호 및 조기 화재 진압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성우

민원실 비상상황 모의훈련 실시

경주교도소는 12월 8일 악성 민원에 의한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소동 중인 민원인을 제지하는 동안 다른 민원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출동한 기동순찰팀이 민원인을 진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장애수형자 재활교육 실시

통영구치소는 12월 4일~8일,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수형자 재



할교육을 실시했다. 총 9명의 장애수형자를 대상으로 종이접기, 미술치료, 포엠테라피(시치유) 등 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관내 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12월 13일 관내 자매결연학교인 부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우 소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하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개최

상주교도소는 12월 20일 교도소 내 강당에서 상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및 상주·문경지역 예술인, 수용자의 재능기부로 마련한 「사랑나눔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윤양호 소장은 “행사를 준비한 교정협의회와 직원 및 수용자,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용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거창구치소는 12월 12일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 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절차 등의 내용을 집합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건하

긴급구호물품 지원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승만)은 연말을 맞이하여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특별히 물품 지원이 필요한 7기정 자녀 10명을 추가 선정,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행정심판위원회 참관

대전교도소는 12월 12일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관인 8명은 교정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구내 시설을 참관하였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실시

청주교도소는 12월 21일 2023년 제2회 청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교정행정 구현 방안’을 주제로 교정기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분석 및 국내외 상생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이철희

교도소 방문 및 현장 순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2월 4일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본부장도 안정적 수용관리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의 뜻을 전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수 차소민

행복한 직장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12월 5일 행복한 직장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부 휴게공간 ‘쉽표’에서 「청주여교야, 아침을 부탁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소란·난동 진압 훈련 실시

공주교도소는 12월 12일 소란·난동 진압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란·난동 조치 매뉴얼을 재정비를 하였으며, 공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수용자들의 소란·난동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수용자 물품 기증

충주구치소는 12월 18일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명예회장 도원스님으로부터 마늘바게트 600개를 기증받았다. 김선희 소장은 “도원스님의 정성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수형자 교화 공연 실시

홍성교도소는 12월 15일 수형자 교화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수형자들의 수용생활 긴장 완화를 통한 교정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출역수 50명과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등 12명의 외부인원이 참가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정책현장 방문

천안개방교도소는 12월 5일 방문한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맞이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채움동, 소통관 등 현장을 둘러보고 여자 수형자의 개방처우 및 양육유이수형자 처우에 대한 현실태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직원후생복지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출정수용자 도주사고 대비 훈련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2월 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출정수용자 도주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수용자 도주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였고, 직원들의 대응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e-Sports 대회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1월 14일~12월 5일 e-Sports 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는 Play Station4를 이용하여 축구, 레이싱, 철권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야근부를 포함 총 9팀이 승부를 벌여 고득점 순으로 1위부터 4위까지 선정해 포상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정영선

불우수용자 지원금 기증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임원진은 12월 13일 광주지방교정청을 방문하여 불우수용자를 위한 지원금 기증식을 가졌다. 교정연합회가 불우수용자 지원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은 질병 또는 가족관계 결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 / 교위 박선주

교정시설 참관 실시

광주교도소는 12월 12일 한반도 평화봉사단 1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하고, 삼계닭 3,000마리와 도서 200권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규철 소장은 "교정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신 한반도 평화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나눔·봉사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12월 6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으로 연탄 2,000장을 저소득 취약계층 7가정에 기증하였고, 교도소 이전 대상지역 소재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훈훈한 마음을 전달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직원탈의실 준공 기념 행사

순천교도소는 12월 18일, 청사 앞 직원탈의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테이프 커팅식, 직원탈의실 준공 현상 소개 후 공사를 주관한 기업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환

장학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12월 6일 무안중학교 학생 5명에게 사랑나눔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은 목포교도소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기금으로 운용되며,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매년 2회 전달하고 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12월 15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센터 백재경 센터장도 함께했다. 오우정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인식개선 교육 실시

제주교도소는 12월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는 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방법 등을 인지하여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직원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12월 8일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한국마약퇴치 광주전남본부 조영석 교육위원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신중마약에 대한 종류 및 교정시설 반입 사례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청년인턴 송별식

해남교도소는 12월 18일, 총무과 민원실에서 고군분투하였던 청년인턴 최가영씨의 송별식을 했다. 인턴 생활을 마친 최가영씨는 "해남교도소에서의 값진 경험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따뜻하게 대해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하였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수용자 교화공연 실시

정읍교도소는 12월 18일 수용자들의 정서안정 및 심성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 수용자 교화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주최했으며, 대중가요, 민요, 색소폰 연주, 팝페라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모범 공무원



영월교도소 교위 한재덕

한재덕 교위는 2009년 영월교도소 개청 준비를 위한 선발대로 지원하여 솔선수범하는 등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보안이 가장 중요한 교정시설의 특성상 순조롭고 안전한 교정시설의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쇠창살 등에 하자가 있는 근무장소를 100개소 이상을 즉시 보수하여 도주사고 등 보안상 문제가 될 부분을 사전 차단해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했다.



대구교도소 교사 고현창

고현창 교사는 현재 대구교도소 총무과 교육·상훈·BSC 담당자로서, 기록물 담당 시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회의록 등의 특수유형 기록물을 관리 대상의 범주로 인식하고 유형별 관리 방법에 따라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52년간 사용해온 행정박물인 관인을 정비함으로 기록물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교위 김열환

김열환 교위는 야간부서 입출소 근무 중 신입교육 및 이송이입 수용자에 대한 부정물품 반입 등에 철저를 다하고, 수용동 근무 중 거실 내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 중인 수용자를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여 교정사고방지유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또한, 23년 10월에는 대전지방 교정청 주관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준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참여 그리고 행사 진행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 교감 마성용

마성용 교감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송무 업무를 전담하면서, 국가 송무 업무의 양적·질적 팽창에 따른 전문화에 대응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능동적인 근무 자세로 대부분의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등 행정 신뢰 제고 및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 억제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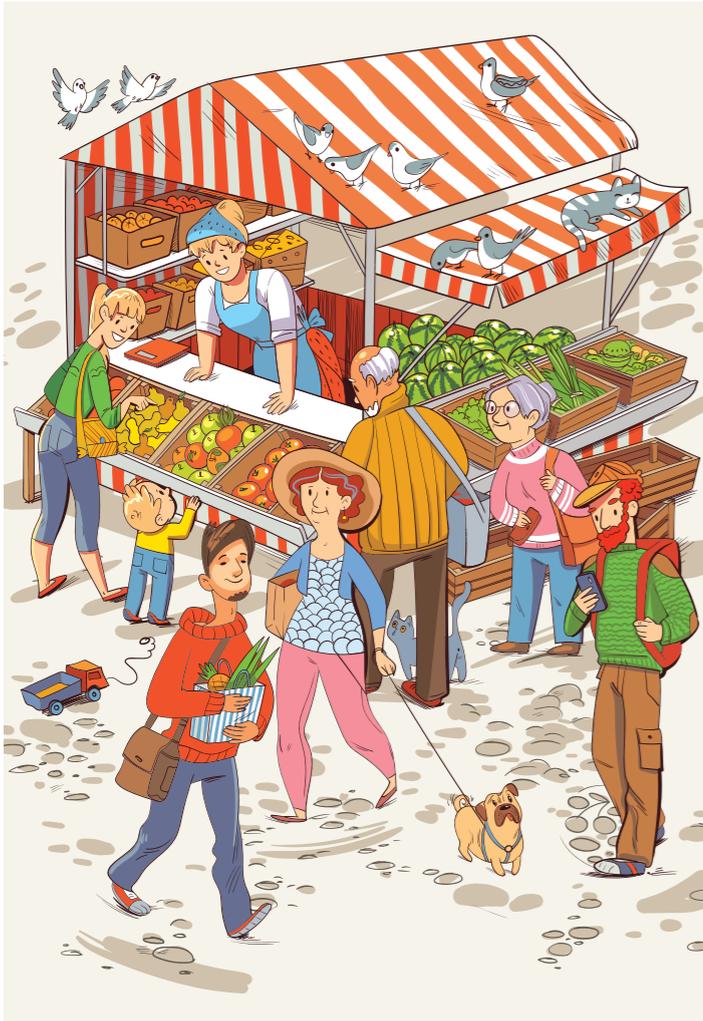


숨은 그림 찾기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와인



양파



아이스크림



치즈



핫도그



사탕



햄버거



체리



당근



고기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발송



Korea Grand Sale



Your Special Moment in Korea